第269回國會 (定期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 5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7年11月13日(火)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계속)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7.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8. 中央行政權限의地方移讓促進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11.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
1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5.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6.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
28.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
29. 農漁村道路整備法中改正法律案
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3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4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9. 任用缺格公務員등에대한退職補償金支給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60.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2. 道路交通法 일부개정법률안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5. 道路交通法 일부개정법률안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7. 道路交通法 일부개정법률안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8. 열쇠관리업법안
79.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전부개정법률안
8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1. 警察大學設置法 폐지법률안
82.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審査된案件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강창일・김재윤・정의용・김영춘・임종석・정성호・남경필・김태홍・노영민・이광철・서갑원 의원 발의) ····· 8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강창일・홍미영・정세균・신명・강기정・우상호・임종석・이미경・우원식・김원웅・김태홍・김영춘・이목희・임종인・조성래 의원 발의) ····· 8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이용희・권오을・홍재형・김낙성・이낙연・심대평・정희수・이성권・류근찬・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 11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11
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우윤근・양형일・유승희・장복심・신중식・최철국・장향숙・이시종・김종률・우원식 의원 발의) ····· 12
82.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5
7.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강재섭・이강두・최연희・송영선・이진구・정병국・김영숙・임인배・이한구・최병국・유승민・서병수・박진・김덕룡・유기준・윤두환・김기춘・정갑윤・박승환・이방호・황진하・진수희・고조흥・심재엽・김석준・박재완・이성구・김태환・허천・김학송・김정부・이혜훈・윤건영・김애실・이성권・곽성문・김문수・이경재・박순자・전재희・김충환・임태희・정종복・나경원・이명규・김양수・박세환・김성조・김정권・김재경・이주호・최구식・김영덕・권오을・안경률・김정훈・이윤성・김무성・이상득・진영・이상배・권영세・안상수・엄호성・이인기・이재창・유정복・김형오・김병호・김명주・정의화・김희정・박형준・안홍준・최경환・주호영・이재웅・김용갑・안택수・장윤석 의원 발의) ····· 15
8. 中央行政權限의地方移讓促進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이인기・안상수・정갑윤・김정권・이해봉・김영덕・배일도・김충환・공성진 의원 발의) ····· 15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이인기・안상수・정갑윤・김정권・이해봉・김영덕・배일도・김충환・공성진 의원 발의) ····· 16
10.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선병렬・홍미영・오영식・김영춘・김부겸・김교흥・김태년・이미경・장향숙・제종길・노웅래・노현송・김덕규・박상돈・김재윤・손봉숙・김성곤・김형주・이경재・윤원호・최순영・배일도・안홍준・박찬석・한명숙・백원우・이경숙・이인영・박기춘 의원 발의) ····· 16
11.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조성태・김명자・김원웅・최성・서상기・엄호성・배기선・원혜영・문병호・이광철・김원기・윤원호・김영춘・이재창・김덕규・이석현・정두언・심재덕・이원영・신학용・이상경・김우남・이영호・문학진・정세균・장영달・김춘진・김진표・박찬석・홍재형・이용희・최규성・김재윤・신기남・오제세・장복심・조성래・홍미영・유승희・김태년・강혜숙・서혜석・양승조・김형주・오영식・박명광・김희선・선병렬・정동채・박기춘・박병석・김재홍・강성종・안민석・이경숙・김현미・김영주・이은영・이시종・김선미・강길부・김기춘・이상배・정갑윤・권경석・이계경・문희・백원

우·이화영·안명옥·박계동·고조홍·진영·송영선·고흥길·정형근·정의화·최연희·이규택·이낙연·김낙성·박성범·김태홍·정장선·안영근·강창일·신국환·이근식·변재일·우윤근·김홍업·김송자·임종인·우원식·채수찬·박상돈·양형일·공성진·조일현·주승용·제종길·강기정·최재천·김낙순·이종구·이성구·김부겸·유필우·임종석·황진하·정문헌·이해봉·나경원·이계진·노현송 의원 발의) ····· 19
1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최구식·김양수·김정권·권영세·신상진·정화원·이강두·김광원·엄호성·정의화·김영숙·고조홍 의원 발의) ····· 20
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석준·김정권·김양수·안홍준·권경석·정두언·김명주·이강두·안경률 의원 발의) ····· 20
14.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유선호·권선택·염동연·임종석·이인영·한병도·우제창·김태홍·안민석·박상돈·진수희·김덕규·홍미영·장향숙·노영민·신중식·김기석·이계진·장경수 의원 발의) ····· 20
15.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강창일·고진화·노현송·문석호·박재완·변재일·신국환·심재철·이윤성·이은영·이해봉·황우여 의원 발의) · 20
16.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장영달 의원 대표발의)(장영달·강창일·조정식·정동채·문석호·홍창선·유재건·노현송·김영주·이기우·김원기·윤호중·오영식·김학송·김효석·이상민·조배숙·김영춘·김태년·서혜석·김명자 의원 발의) ····· 20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신상진·김애실·이해봉·곽성문·이인기·황우여·심재덕·최경환·차명진·김태년 의원 발의) ····· 22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박기춘·원혜영·이근식·문석호·김태년·노현송·이은영·강혜숙·김태홍·우상호·이목희·노웅래·정청래·김근태·김교흥·이인영·김희선·윤호중·김재윤·이광철·정병국·유기홍·박찬석·임종인·김형주·장향숙·오제세·강기정·안민석·윤원호 의원 발의) ····· 22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김종률·이인기·박재완·박찬숙·배일도·엄호성·박형준·이한구·이명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5430) ····· 22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이해봉·차명진·이한구·박형준·신상진·권경석·배일도·이명규·이인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6116) ····· 22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 의원 대표발의)(이재웅·이명규·이계진·이상배·김병호·류근찬·이성권·정종복·김정권·박계동 의원 발의) ····· 22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이주영·안영근·김용갑·양승조·김영덕·김학원·엄호성·유기준·문석호·박형준·정형근·김홍업·최인기·서갑원·신중식·이낙연·김성곤·이영호·유선호·남경필·심재엽·안경률·이인제·권선택·허천·김병호·김양수·이상열·박세환·황우여·이진구·정갑윤·이강두·주승용·우윤근·채일병·최연희·박상돈·김명주·김교흥·조경태·김재경·박희태·김정권·문병호·정의화·최구식·안홍준·권경석 의원 발의) ····· 22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최규식·박희태·김기춘·장복심·우제항·이강두·이주영·이윤성·박상돈·우제창·노현송·서재관·강봉균 의원 발의) ····· 22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김정권·김재원·차명진·이경재·이재오·배일도·박상돈·박형준·진수희·이성권·공성진·나경원·김애실 의원 발의) ····· 22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민병두·김희선·노현송·윤호중·김태년·전병헌·임종석·배기선·이경재·정성호·김교흥·김재윤·김혁규·김진표·강성종·유인태·김동철·김선미·김명자 의원 발의) ····· 22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2
27.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덕 의원 대표발의)(김영덕·김기현·이인기·심재철·김

용갑・한광원・박재완・김광원・이방호・조일현・이상배・김명주・김재원・김재경・권경석・안상수・신중식・이영호・김낙성・안명옥・김우남・김충환・강기갑・박승환 의원 발의) ····· 25
28.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태홍・강기정・신학용・박영선・박상돈・장경수・심재덕・서혜석・노현송・이시종・강창일・정성호・최규식・김태년 의원 발의) ····· 25
29. 農漁村道路整備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조경태・박재완・이철우・황우여・임채정・유재건・김재홍・복기왕・신기남・정장선 의원 발의) ····· 25
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김재원・김정훈・김희정・안상수・안택수・엄호성・유기준・이강두・정갑윤・정문헌 의원 발의) ····· 25
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신상진・이상배・안상수・정갑윤・김성곤・김태환・김양수・안홍준・김광원・박찬숙・김영숙 의원 발의) ····· 25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강기갑・최순영・임종인・현애자・최성・심상정・노회찬・천영세・단병호・이영순 의원 발의) ····· 27
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염동연・강창일・노영민・정동채・변재일・조성래・최규식・박기춘・김동철 의원 발의) ····· 27
34.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신상진・정갑윤・이인기・김학송・김석준・이계진・이성권・이계경・박세환・김명주・이명규・김양수・김애실・한선교 의원 발의) ····· 27
3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이인기・이경재・안상수・정문헌・이계경・신상진・고조흥・김정권・유재건・김애실・임해규 의원 발의) ····· 27
3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김정권・박계동・허천・권경석・신상진・곽성문・이주호・허태열・이해봉・이강두・고조흥 의원 발의) ····· 27
3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민병두・이경숙・김재윤・선병렬・박영선・조성래・박찬석・유재건・김현미・강기정・윤호중・안민석・서혜석・김영주・임종석・김희선・이광철・김태년 의원 발의) ····· 27
3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정권・이인기・안상수・김재원・서상기・이명규・엄호성・김양수・최성 의원 발의) ····· 27
3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강기갑・강창일・권영길・김태홍・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정청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 27
4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민병두・안민석・윤호중・김교홍・이미경・유기홍・최재성・이인영・이은영・정봉주・변재일・정성호・정청래・김춘진 의원 발의) ····· 27
4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27
4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4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4
4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발의)(안경률 의원 외 19인 발의) ····· 34
4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김효석・이상열・신중식・권선택・박상돈・안상수・정성호・최규성・안명옥・이근식・장복심・신학용・채일병・고조흥・주승용・문학진・강창일・우윤근・서갑원 의원 발의) ····· 34
4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강창일・박상돈・심재덕・양형일・이인영・홍미영・이용희・정장선・문학진・우제창 의원 발의) ····· 39
4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심재덕・안상수・이광철・신상진・강창일・오제세・유선호・신중식・이시종・이기우・노현송 의원 발의) ····· 39
4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 의원 대표발의)(강성종・송영길・김동철・박상돈・최

성・김선미・권선택・유재건・김명자・배기선・문희상 의원 발의) ····· 39
4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 의원 대표발의)(강성종・송영길・김동철・박상돈・최성・김선미・권선택・유재건・김명자・배기선・문희상 의원 발의) ····· 39
5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강창일・김동철・김태홍・노영민・류근찬・박기춘・변재일・염동연・이목희・이상열・조성래・원혜영・채일병・최규식 의원 발의) ····· 39
5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황우여・강기갑・곽성문・이인기・심재철・김정권・김영덕・유승희・단병호・권영길・노회찬・심상정・현애자・천영세・최순영 의원 발의) ····· 41
5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신상진・공성진・정갑윤・박재완・유승희・이해봉・진수희・안상수・유재건・고조홍・김태년 의원 발의) ····· 41
5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곽성문・김양수・김정권・김태년・박재완・박형준・양승조・이경재・이계경・정문헌・정종복 의원 발의) ····· 41
5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성구・배일도・유재건・권오을・유기준・이인기・이성권・이계경・안상수・김기현・맹형규 의원 발의) ····· 42
5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이상열・박상돈・김낙순・박기춘・이종걸・노현송・김영춘・홍미영・이인영・유선호・김혁규・양형일 의원 발의) ····· 42
5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이재오・정종복・엄호성・유재건・전여옥・김정훈・김무성・유기준・김석준・배일도・정성호 의원 발의) ····· 42
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2
5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정권・이인기・안상수・김양수・김재원・서상기・이명규・엄호성・이성권 의원 발의) ····· 42
59. 任用缺格公務員등에대한退職補償金支給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정성호・문희상・김재원・이인영・김선미・김부겸・김영덕・정갑윤・이상배 의원 발의) ····· 42
60.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유인태 의원 대표발의)(유인태・최연희・윤호중・이인영・권경석・김명자・최규식・심재덕・김낙순・김근태・문희상・김부겸・강창일・박기춘・노현송・김영춘・임종석・배기선・홍미영・한병도・김원기・정두언・김재윤・원혜영 의원 발의) ····· 46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홍미영・강기정・조성래・이목희・강창일・이계안・서갑원・이인영・주승용・윤원호・우상호・김학송・최규식 의원 발의) ····· 46
62. 道路交通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배기선・박재완・정희수・노현송・정병국・서재관・신국환・이해봉・정봉주・구논회・맹형규・신상진・김재원 의원 발의) ····· 46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정병국・이혜훈・한선교・안홍준・정종복・최구식・박승환・이군현・서상기・이종구・김충환・신상진・정희수・임인배・이계진・박찬숙・김재경・김정권 의원 발의) ····· 46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장향숙・강창일・홍미영・우원식・지병문・정의용・최규성・김재경・조성래・정청래・우윤근・박영선・김선미・이혜훈・나경원・조성태・노영민・선병렬 의원 발의) ····· 46
65. 道路交通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진수희・엄호성・정문헌・이규택・최성・박재완・이재오・정병국・고경화・최재성・안택수・황우여・정봉주・손봉숙・배일도・김애실・이해봉・고흥길・이혜훈・유승희 의원 발의) ····· 46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유기준・이성권・박상돈・김애실・김충환・최성・이명규・박형준・김정훈・박성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5968) ····· 46
67. 道路交通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강기정・유승희・강혜숙・김현미・

정봉주・노웅래・신중식・선병렬・이광철・신기남・염동연・한광원・이경숙・이인영・박영선・김재홍 의원 발의) ····· 46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발의)(박성범 의원 외 19인 발의) ····· 46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엄호성・정봉주・우제창・김태환・이근식・이윤성・배일도・이미경・안상수・주승용・김영춘・김태년・김석준・박찬숙・손봉숙・강기정・우제항・김교흥・최인기・신중식・김동철・김재홍・고조흥 의원 발의) ····· 46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정문헌・유기준・배일도・이명규・문희상・정병국・최인기・이계경・신상진・곽성문 의원 발의) ····· 46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이원영・박세환・이인기・손봉숙・고진화・김태년・정성호・조경태・양승조・임해규・고조흥 의원 발의) ····· 46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엄호성・김재원・이해봉・박찬숙・김재경・김태년・공성진・고경화・손봉숙 의원 발의) ····· 47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진구・김재원・홍준표・엄호성・김재경・배일도・고경화・정종복・허천・이재오・정장선・신상진・이혜훈・안상수・이근식・심재철・조경태・이인기・박찬숙・유정복・이상경・이윤성・황우여・나경원・고진화・고조흥 의원 발의)(의안번호 2295) ····· 47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광 의원 대표발의)(박명광・이미경・신중식・김낙성・최성・장복심・이영호・채일병・김낙순・서혜석・정청래・김재윤・강창일 의원 발의) ····· 47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민병두・장영달・이원영・이미경・최성・임종석・유선호・우상호・이경숙・노현송・홍미영・윤호중・이목희・백원우・우원식・김영춘・이은영・정성호 의원 발의) ····· 47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정성호・윤호중・이광철・이계경・정갑윤・김정권・박기춘・송영길・백원우・민병두・김성곤・김현미・김교흥・이인영 의원 발의) ····· 47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이성권・황우여・박성범・안명옥・정희수・정갑윤・공성진・배일도・김충환・이인기・신상진 의원 발의) ····· 47
78. 열쇠관리업법안(고조흥 의원 대표발의)(고조흥・안상수・조성래・이인기・엄호성・이해봉・안택수・송영선・김양수・이혜훈 의원 발의) ····· 47
79.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문학진・홍미영・김영주・김영춘・강창일・이광철・최규식・이목희・민병두・김근태・원혜영・정성호・노현송・박기춘・강기정・이미경・임종석・우원식・오영식・유선호・이경숙・이은영・강성종 의원 발의) ····· 47
8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황진하・신상진・김정권・이성권・안상수・정의화・한선교・김명자・이상열・황우여・김양수 의원 발의) ····· 47
81. 警察大學設置法 폐지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정갑윤・이영순・정성호・지병문・이원영・임종인・이목희・김정권・신학용・문학진 의원 발의) ····· 47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유인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남원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인태 오늘 상정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사안별로 묶어서 상정을 하되 안건심의는 건별로 하도록 하고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을 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의 발의법안에 대한 답변은 위원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 의원 대표발의)(김원웅·강창일·김재윤·정의용·김영춘·임종석·정성호·남경필·김태홍·노영민·이광철·서갑원 의원 발의)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강창일·홍미영·정세균·신명·강기정·우상호·임종석·이미경·우원식·김원웅·김태홍·김영춘·이목희·임종인·조성래 의원 발의)

(10시21분)

○위원장 유인태 먼저 제1항 및 제2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 나오셔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서울 구로 갑 지역의 이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재심 또는 호적정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거사특별법과 달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에 이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어서 국가의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련 당사자들의 권익을 구제하는 데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위원회의 재심 및 호적정정 권고에 대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희생자 및 유가족의 권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국민 화해와 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모쪼록 동 법률안이 이번 회기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장인식 수석전문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건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웅 의원 대표발의의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산지관리법에서 법령에 열거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가 유해발굴을 위해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고를 한 후 이를 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으로 완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존속 기간 내에 유해발굴을 통한 진실규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기 위한 취지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른 법률에 허가사항으로 정한 행위를 이 법에서 포괄적으로 신고사항으로 완화할 경우 다른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신고만으로 형질변경 등이 가능해질 경우 과다한 유해발굴로 인해 토지 등 주변 환경이 훼손될 우려도 있겠습니다.

셋째, 부득이 개정안과 같이 이 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법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 법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겠으며, 또한 조사·발굴 과정에서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상회복 및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은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형사소송법 제422조(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군

사법원법 제471조(확정판결에 갈음하는 증명)에 따른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피해자 등의 호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에 따른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사실의 증명으로 볼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 상황하에 발생하였던 반민주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 등을 진실규명 대상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발생한 사건 중에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의 불법체포나 감금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건 관련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폐기되었고 수사관의 불법체포, 감금죄 등은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여 그 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다수의 진실규명 대상 사건들이 형사소송법 등에 해당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심청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을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사회적 증명으로 볼 수 있도록 열어주어 권익을 구제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감안해 볼 때 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법적 절차 방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그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등 그 타당성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의 자유심증주의나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가 되겠습니다.

둘째, 위원회의 결정을 재판상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호적정정 등은 제주4·3사건 관련법의 입법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鎔熙 委員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태 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鎔熙 委員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호적정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혼의 예를 들면, 재판상 이혼이 있고 합의상 이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은 재판으로 결정하니까 호적정정이나 다른 무슨 영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상 이혼일 경우에는 법원에서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법원의 판결에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동일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단순히 위원회의 사실증명으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입법례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그래서 적어도 법원의 확인절차 정도는 거치는 것이 어떻겠느냐, 법원을 관여시킴으로써 신뢰감이나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시간상으로 이혼 사례 같은 게 법원의 확인절차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데 이것은 그것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적어도 법원을 관련시키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떻습니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기인 제가 법리상 그런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 나가는 일이 앞으로 상당히 양이 많아집니다. 그 숫자가 많아질 때 법원도 대단히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그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일들이 시간이 지연됨으로써 기한 내에 하려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이게 자꾸 지연되면 국력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崔鎔熙 委員 그런데 절차상 편의나 이해당사자들의 단순한 편의를 위해서 사법체계를 그대로 무시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원도 중간에 재판절차를 거치든가 또는 처음부터 화해제도를, 재판상 확인하면 화해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이것도 해놓고 이해관계자들이 재심청구를 하거나 복잡해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위원회가 열심히 하시지만 절차상, 민주주의라는 것이 절차중시 아닙니까? 절차를 좀더 갖춰놓는 것이 나중에 시비 소지거리를 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소위원회에서 이 점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태 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존경하는 이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과거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유를 보면, 형사소송법 제422조에 보면 확정판결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사실증명을 대신 얻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재심 판결의 사유로 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고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님, 그렇습니까?

○이인영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유기준 위원 법원의 실무예를 보면, 위원회의 결정이면 이게 공문서거든요. 공문서 사문서가 차이가 좀 있는데 공문서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실무예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개정안같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 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자체를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사실증명으로 하게 되면 법원이 지나치게 여기에 기속이 되면서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재량에 의해서, 우리 헌법에 보면 판사는 법률과 양심 외에는 다른 기속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판사들의 결정권한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상 재판의 독립에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누가 답변하시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법률 전문가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신지 말씀하시고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정책보좌관 김진태 저는 진실화해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는 중앙지검의 김진태 부장검사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연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법원에서 협의이혼에서 확인하듯이 그런 절차를 뒀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당연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이런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가지고 재심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아, 위원회의 이런 결정이 있구나' 이것을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를 인정하게 되면 그 자체가 협의이혼에서의 확인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유기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이게 이인영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처음의 생각은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로 본다'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속이 되어서 재심개시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소 자유심증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동안 여러 관계 부처와 협의과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된 겁니다.

○유기준 위원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 하더라도 과거사위원회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그것을 사실증명으로 해서 형소법 제422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것까지 사실증명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전에는 자유재량인데 이제 기속재량으로 가버리면서 법원의 판단의 여지를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을 텐데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정책보좌관 김진태 그것은 그냥 단순히 공문서라고 해서……

○유기준 위원 아니, 지금 현행법하에서도 위원회의 어떤 재심결정 또는 권고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다 재심을 청구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정책보좌관 김진태 청구는 할 수 있는데요.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청구해서 그것을 법원에서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데 여기에서 좀더 나아가서 과거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법원 판결하고 똑같이 해 버리면 법원에서는 무조건 재심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정책보좌관 김진태 재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유기준 위원 이렇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정책보좌관 김진태 지적하신 대로 지금도 법원에서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유기준 위원 그런데 지금의 운용 예를 보면 과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자유재량을 가지고 재심 재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바로 판결이 되면 법원에서는 더이상 재량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정책보좌관 김진태 아닙니다. 근거규정을 넣는 것이고요, 지금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임의조항이기 때문에요.

○유기준 위원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그런 근거규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전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숨겨진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정책보좌관 김진태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유기준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지나치게 문구에만 한정해서 이렇게 바꾸더라도 법원에서 또다시 자유재량으로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그러면 현재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현재의 형소법 제422조에 의하더라도 법원이 재심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강한 문구로 바꿔 가지고 법원의 재량을 뺏는 쪽으로 간다면 결국은 과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따르라는 그런 의미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유인태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崔鉉熙 委員 검찰 출신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현재 파견 나가 있지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정책보좌관 김진태 예.

○崔鉉熙 委員 법원에 의견조율을 해 봤습니까? 이 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법원의 의견을 구해 봤느냐고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정책보좌관 김진태 법원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鉉熙 委員 그거 안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진실화해규명위원회도 국가기관이고 법원도 국가기관인데 이런 중요한 법원 관련 법을 보낼 때는, 검찰에는 의견 조회했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사무처장 설동일 예, 법무부에 했었습니다.

○崔鉉熙 委員 그런데 법원은 왜 안 했어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정책보좌관 김진태 그때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법원 쪽에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저쪽에서 참석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崔鉉熙 委員 참석하지 않은 거하고 의견조회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구하지 못한 거하고 다르지요. 그러니 신속히 소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직접 공문서를 들고 가서 법원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성과도 없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놔야지, 바로 좀 기관 자체에서 하세요. 해 가지고, 법원의 의견도 들어보는 게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조사정책보좌관 김진태 (고개 끄덕임)

○위원장 유인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진실화해위원회 송기인 위원장님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송기인 감사합니다.

---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관한 법률안**(정진석 의원 대표발의)(정진석·이용희·권오을·홍재형·김낙성·이낙연·심대평·정희수·이성권·류근찬·권선택 의원 발의)(계속)
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노영민·우윤근·양형일·유승희·장복심·신중식·최철국·장향숙·이시종·김종률·우원식 의원 발의)

(11시41분)

○위원장 유인태 이어서 제3항~제6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6항 노영민 의원안은 지난 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정진석 의원안과 유사하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동 법안에 대하여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위원 정갑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그동안에 아마 충북 충남 공주 연기 청원 의회와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의회나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고 했고, 또 반대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이 주민투표를 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주민투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러면 결국 무슨 결과가 나오든지 관계없이 특별법이니까 국회에서 해결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지방자치단체를 통폐합 설치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있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 요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주민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해서 그 지역 사람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제외한 전 충북도의 얘기를 다 들어야 될 것인지, 그런 경우도 정확한 의견을 반영하기도 어렵고 또 경비도 많이 소요되고 시간도 많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저희들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다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행자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법 제정할 때 공청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정진석 의원이 개최하는 공청회라든지 그쪽에 있는 방송국이 개최하는 공청회나 토론회에는 여러 번 나가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법을 행자위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한 번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정갑윤 위원 정말 의회나 자치단체가 찬성하는 지역도 있고 반대하는 지역도 있고, 또 심지어 단서가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시한 데도 있고 그럴 바에야 이번 기회에 차라리 법을 바꿔 가지고 아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물을 필요 없이 중앙정부가 해 버리면 낫지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저희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게 올바른 절차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수렴을 좀 했습니다. 꼭 투표를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갑윤 위원 찬성하고 있다 반대하고 있다 의견을 듣는 것, 해 주자 안 해 주자 그 논리가 아니고요.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었으면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듣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참고를 해야 되겠지요. 한데 저희들이 과거의 복합 시·군 통합할 때, 예를 들어서 안동시와 안동군 통합할 때 그때 40여 개를 통합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법원에까지 가서 얘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절대적 요건은 아니고 참고할 사항이다'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준수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 각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고 의회의 의견을 들었고 지금도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듣고 있고, 여기에 아마 주민들 대표도 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이 법안 심의과정에서 행자위에서 공청회를 한번 개최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정갑윤 위원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의회에서 결정해 올라와서 법 절차대로 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이해당사자들이 찾아와서 사람을 정말 못살게 굽니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태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崔鉉熙 委員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정법이잖아요. 제정법은 원래 원칙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체회의에서 하거나 소위원회에서 하거나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좋고,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투표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선택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속될 필요는 없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관련된 기관의 시·군 의회에서 표결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각양각색입니다.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鉉熙 委員 표결은 안 하고요? 단순한 의견 제시입니까, 아니면 표결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표결은 아니고요, 지방의회 의견을 대표해서 거기서 보내왔습니다. 표결과 같은 성격이겠지요. 의회의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崔鉉熙 委員 물론 의회의 의장명의로 보냈다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보낸 것이겠지만 그래도 표결을 했더라면 시비의 소지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의 의견들이 상충되니까 아마 그런 문제들 때문에……

○崔鉉熙 委員 그래서 그 의회의 의견하고 관련된 지역주민들, 특히 한 4분 1정도 들어가는 데가 연기군인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연기군입니다.

○崔鉉熙 委員 그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합디다.

원칙적으로 편입을 반대한다는 것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심으로는 해 주려면 다 넣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자체가 그 절차를 또 거치려면 복잡한 면이 있어요. 모든 절차를 다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투표도 안 거치는데.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고요.

○崔鉉熙 委員 그리고 공청회 할 때 그분들이 와서 의견을 내든가, 하여튼 공청회는 거쳐야 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유인태 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권경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시에 관한 법률은 우선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 하나하고, 행정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문제, 시행시기에 관한 문제로 내용이 이 세 가지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권경석 위원 그런데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도 지금 특별시기 때문에 시·도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문제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와 여론수렴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했고, 또 특별시가 되면 필연적으로 시·도 경계조정을 해야 됩니다. 시·도 경계조정을 하려면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장관님? 시·도 경계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물론입니다.

○권경석 위원 특별시가 시·도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면 충남도의……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그러니까 관할구역 문제지요.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경계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경계에 관한 변경을 하려면 시·도 경계에 관한 법률이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지금 이 법으로서 대체하기 때문에……

○권경석 위원 아니, 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특별법의 효력은 시·도 경계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는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권경석 위원 그렇지요, 이 특별법의 취지가?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권경석 위원 그런데 통상 시·도 경계를 조정하려면 지금 시·도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거든요. 지금 지난 YS 정부 때 시·도 경계 조정 때문에 온 천지가 뒤집힌 적이 있어요. 시·도 의회 통과하는 데 곤혹을 치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고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달랑 특별법 통과시켜 가지고 조정한다, 기존의 시·도 경계에 관한 법률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 아시다시피 시·도 경계 조정문제는 시·군 경계 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심층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법안소위에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원천적으로 절차상 많은 문제를 안아왔고 또 지금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기존의 법률을 무력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 심각성을 전제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이 경계 조정 문제는 기존의 자치단체를 두고서 이쪽, 저쪽 소속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이것은 새로운 자치시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소위 과정에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들을 갖다 충분히 저희들이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태 권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배 위원 이것 시행일을 언제로 보고 법안을 만들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2010년 7월입니다.

○이상배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고, 지금 허허벌판에 인구 몇만 명 되는가? 그런데 거기다가 도지사급으로 무슨 자치단체를 하나 만들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아마 대통령이 그만둘 때가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년도 가서 법을 만들어도 되고 또 2009년에 가서 만들어도 되지 도지사급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쩌겠다는…… 그 밑에다가 읍·면장 데리고 나는 도지사급이다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충남지사도 반대하고 그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소위원회에 넘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 법은 만들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거라고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위원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법이 지금 마련되어 가지고 많은 행정기관이 움직여가지 않습니까? 거의 행정수도에 버금가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법이 필요하고요. 무슨 광역자치단체를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기초와 광역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단일한 행정관청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이상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요. 그러면 여기 자치단체 종류에 어떻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새로운 것을 하나 집어넣는 셈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이상배 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시간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할구역을 정하고 이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광역으로 할 것인가 기초로 할 것인가 그것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확정이 되어야만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고요. 지금 울산시청이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적 지위만 바꾸는 데 2년이 소요되었고요. 시간상으로도, 지금 물리적으로도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게……

○이상배 위원 물리적으로는 내년 한 6월쯤 해도 되고 내년 연말까지 해도 됩니다. 2008년 연말까지 해도 2010년 7월 1일부터 하는 데 지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주 뭐 이름 바꾸는 것 이것도 주민투표 했어요. 그때 안 했습니까? 했어.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그렇게……

○이상배 위원 했는데 자꾸 안 했다고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광역자치단체를 하나 만드는데 이것을 그 해당 도지사하고 해당 자치단체 군수 의견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이고

요.

그다음에 설사 30만이 된다고 합시다. 30만에다가 도지사하고 같이…… 특별시·광역시·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같이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광역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광역과 기초의 지위를 겸하는 새로운 하나의……

○이상배 위원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광역자치단체의 종류는 안 들어갑니다. 새로운 종류를 하나 설치하는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DC같이 그런 특별, 그런 하나의 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상배 위원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종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아닙니다. 광역자치단체 종류 같으면 그냥 광역자치단체에 그대로 놔두면 될 텐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이상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의 어느 부처 이런 기관이 아니고 광역……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정부 직할하에 두는……

○이상배 위원 그게 무슨 단체예요? 광역자치단체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그러니까 지금 광역과 기초를 동시에 겸하는, 지금 광역자치단체에는 밑에 또 시·군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시·군이 없습니다. 단일 자치입니다.

○이상배 위원 워싱턴DC는 수도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행정…… 여러분들이 행정복합도시라고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놨지 수도는 아니거든.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행정수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이상배 위원 수도적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수도아닌적 기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도적이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장 유인태 이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심사 중이지만 의결 사안이 있습니다.

---

82.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1시57분)

○위원장 유인태 제82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나라당의 소위원회 위원 변경 통보에 따라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수고하셨던 정두언 위원 대신에 유기준 위원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예산안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그동안 수고하셨던 유기준 위원 대신에 정두언 위원을 예산안결산심사소위원회로 각각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 법안은 의사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체토론 종결을 전제로 제정법안 등의 공청회 개최를 포함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소위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강재섭·이강두·최연희·송영선·이진구·정병국·김영숙·임인배·이한구·최병국·유승민·서병수·박진·김덕룡·유기준·윤두환·김기춘·정갑윤·박승환·이방호·황진하·진수희·고조흥·심재엽·김석준·박재완·이성구·김태환·허천·김학송·김정부·이혜훈·윤건영·김애실·이성권·곽성문·김문수·이경재·박순자·전재희·김충환·임태희·정종복·나경원·이명규·김양수·박세환·김성조·김정권·김재경·이주호·최구식·김영덕·권오을·안경률·김정훈·이윤성·김무성·이상득·진영·이상배·권영세·안상수·엄호성·이인기·이재창·유정복·김형오·김병호·김명주·정의화·김희정·박형준·안홍준·최경환·주호영·이재웅·김용갑·안택수·장윤석 의원 발의)

8. **中央行政權限의地方移讓促進등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이인기·안상수·정갑윤·김정권·이해봉·김영덕·배일도·김충환·공성진 의원 발의)

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이인기・안상수・정갑윤・김정권・이해봉・김영덕・배일도・김충환・공성진 의원 발의)

10.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신명・선병렬・홍미영・오영식・김영춘・김부겸・김교흥・김태년・이미경・장향숙・제종길・노웅래・노현송・김덕규・박상돈・김재윤・손봉숙・김성곤・김형주・이경재・윤원호・최순영・배일도・안홍준・박찬석・한명숙・백원우・이경숙・이인영・박기춘 의원 발의)

○위원장 유인태 다음,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권경석 의원 나오셔서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의원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만 2년 10일 전에 대표발의한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지만 실제로 지방이양 실적은 국가사무의 3.5%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인력・예산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으며 국가사무 이양 후에도 국가공무원은 12%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증설, 중앙정부의 비대화와 권한 강화는 가속화되고 있고 중추관리기능의 중앙 집중으로 수도권은 비대화되고 지방은 고사상태에 이르는 등 반분권적 국정운영으로 국가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추진을 위하여 2004년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은 그 내용이 선언적이고 형식적이어서 지방분권추진법으로서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위주의 집권적 국정운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계 선진 각국들은 비대한 중앙정부의 비효율성 극복에 초점을 맞추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분권화와 민영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중앙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일괄이양, 중앙부처 수의 2분의 1 축소, 우정 개혁과 함께 중앙공무원의 20% 감축 추진, 지방자치권의 확대 등 분권화・민영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는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적 과제이며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사활의 과제이며 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추진시한을 명시하고 이를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실효성 측면에서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현행의 지방분권특별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포괄적 입법조치가 시급합니다.

먼저 권한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사무는 지방에 일괄 이양하는 법률을 제정하며 후속하여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개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법률안 발의 취지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급한 필수적 과제의 우선적 해결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률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기준 의원 나오셔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의원 먼저 법안소위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돌고 돌아서 원위치에 많이 오고 있던데 저도 돌고 돌아서 법안소위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17대 국회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유기준 의원입니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형식상으로만 기능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전부개정법률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었습

니다.

종전 법을 운영한 결과 이양대상사무의 발굴이 중앙과 지방 정부의 협조 부족으로 쉽지 않았고 법령상 규정된 사무의 사무심사에만 한정되어 현행 법령상의 사무배분이 중앙부처 위주로 제·개정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분권적으로 제·개정된 법령을 사후에 바로잡기 위해서는 막대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무배분체계를 분권 이념에 적합하도록 바꾸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상설화하고 사무기구를 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등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법령상 사무의 구분 및 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보완하고, 둘째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본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간에 합리적으로 업무를 배분하며, 셋째 위원회 사무처의 상설화, 전문위원 및 공무원 등의 파견제도 등을 개선하고, 넷째 정부의 법령 제·개정 시 사무의 구분 및 배분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며, 다섯째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의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지방자치법에서 사무배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양대상사무 선정에 애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시·도 및 시·군·자치구 사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여 중앙정부의 합리적인 권한배분과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에서 시·도 사무로 처리 또는 조정되어야 할 사무와 규제적 사무 등을 개정하고 국가와 시·군·자치구 간 연락조정을 대신하여 재원 및 정책조정 등의 사무로 개정하며 시·도 단위로 관리해야 될 사무를 보완하여 현실에 맞도록 시·도 사무의 기준을 개정·보완하고,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를 대통령령 또는 개별 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법률안은 이전에 설명드린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의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 의원 나오셔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신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장소에 도달하는 것은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입니다. 보행과 보행이 이어지는 보도는 인간과 사회를 잇는 소통의 장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보도가 안전하지도 편리하지도 쾌적하지도 못하고 걷기도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차도로 우회하여 걸어야 할 곳에서부터 보도블록이 깨지거나 높낮이가 들쑥날쑥해서 평지임에도 사람들이 곧잘 넘어지는 곳, 전신주, 환기구, 전화부스, 가로수 등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간 우리의 도로정책이 원활한 차량 소통에 역점을 두었고 22개 기관에서 100여 종에 달하는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주민 참여가 미흡한 데 그 까닭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권 조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법이 없고 그 실행이 미흡하여 보행권에 대한 기본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보행권을 확보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은 선진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부디 이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서 국가가 균형발전이 되고 국민의 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권경석 의원 대표발의의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3년 12월에 제정된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더불어 이른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의 하나로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경찰·재정 등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47개의 주요 분권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제도인바, 그중 주요 과제인 주민투표제, 소송제, 소환제는 틀을 갖추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재정 독립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인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도 특별히 개선된 부분이 없으며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도 부진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법률안은 세계적 추세인 지방분권의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분권화와 민영화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추진 일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7조에서 분권과제의 추진 일정·방법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추진 실적을 공표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 이내에 정책의 시행을 완료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은 5년 범위의 한시법이자 선언적 규정으로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분권과제의 추진 일정과 실적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무 이양방식의 문제점 개선 필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일괄적 이양방식에 대해서는, 지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서 지적하였던 바와 같이 99년에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이 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단위사무별 지방이양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방이양 실태를 보더라도 국가사무 총 3만 240개 중에서 4.9%인 1426개 사무의 지방이양이 확정된 이후에 실제 이양이 완료된 업무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1087건으로 전체의 76.2% 수준입니다. 일부 부처의 기피 등으로 19.7%인 292건이 아직 이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 이양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일본의 지방분권일괄법과 같이 중앙행정권한의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지방이양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보고서로 되어 있는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의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개정안은 안 제7조제5호에서 사무배분의 사전심사 기능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처인 법무부나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에서는 소관 부처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사전심사 대상 법령의 범위와 내용이 불분명하고 법령 입안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입장을 보면 사무배분의 적정성에 한해 심의하므로 고유권한의 침해가 아니며 국가와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간의 사무 신설·변경에 한해 심의하도록 하고 규제개혁위 심사기간과 병행 추진하므로 추가 소요가 없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사무배분의 구분기준 설정을 위하고 법령 제·개정 후 사후심사에 따른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무배분의 사전심사 기능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심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인태 위원장, 노현송 간사와 사회교대)

끝으로 신명 의원 대표발의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제안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도는 각종 공공시설물, 전신주 등이나 노점상 등에 의해 무질서하게 점령당하고 있고 보도 구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흡하여 보행 동선이 차단되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보행공간의 절대부족에 따른 보행안전 저해 및 보행장애 초래와 더불어 그간 원활한 교통 소통 위주의 도로정책으로 인해 보행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제정안은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인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권 확보와 보행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 등 관계 기관의 책무, 공적 추진체계와 같은 기본적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보행정책 연구·추진 등의 주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안 제14조에서 정책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행정책이 원활하게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행정 전반을 소관하고 있으며 종합적·총괄적 행정 부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자치부로 하여금 지원업무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보행교통은 교통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전체 교통정책과 조화를 이루어 추진되는 것이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등과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올해 보행방법 개선 필요성 및 보행시설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보행시설물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전문성을 감안한다면 주무 부처를 건설교통부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처의 입장을 들어서 소위원회에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대리 노현송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7항~제10항은 제정법안의 공청회를 포함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11.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곤 의원 대표발의)(김성곤·조성태·김명자·김원웅·최성·서상기·엄호성·배기선·원혜영·문병호·이광철·김원기·윤원호·김영춘·이재창·김덕규·이석현·정두언·심재덕·이원영·신학용·이상경·김우남·이영호·문학진·정세균·장영달·김춘진·김진표·박찬석·홍재형·이용희·최규성·김재윤·신기남·오제세·장복심·조성래·홍미영·유승희·김태년·강혜숙·서혜석·양승조·김형주·오영식·박명광·김희선·선병

렬·정동채·박기춘·박병석·김재홍·강성종·안민석·이경숙·김현미·김영주·이은영·이시종·김선미·강길부·김기춘·이상배·정갑윤·권경석·이계경·문희·백원우·이화영·안명옥·박계동·고조홍·진영·송영선·고흥길·정형근·정의화·최연희·이규택·이낙연·김낙성·박성범·김태홍·정장선·안영근·강창일·신국환·이근식·변재일·우윤근·김홍업·김송자·임종인·우원식·채수찬·박상돈·양형일·공성진·조일현·주승용·제종길·강기정·최재천·김낙순·이종구·이성구·김부겸·유필우·임종석·황진하·정문헌·이해봉·나경원·이계진·노현송 의원 발의)

12.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최구식·김양수·김정권·권영세·신상진·정화원·이강두·김광원·엄호성·정의화·김영숙·고조홍 의원 발의)

1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김석준·김정권·김양수·안홍준·권경석·정두언·김명주·이강두·안경률 의원 발의)

14.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장복심·유선호·권선택·염동연·임종석·이인영·한병도·우제창·김태홍·안민석·박상돈·진수희·김덕규·홍미영·장향숙·노영민·신중식·김기석·이계진·장경수 의원 발의)

15.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양승조·강창일·고진화·노현송·문석호·박재완·변재일·신국환·심재철·이윤성·이은영·이해봉·황우여 의원 발의)

16. **法令등公布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장영달 의원 대표발의)(장영달·강창일·조정식·정동채·문석호·홍창선·유재건·노현송·김영주·이기우·김원기·윤호중·오영식·김학송·김효석·이상민·조배숙·김영춘·김태년·서혜석·김명자 의원 발의)

(12시17분)

○위원장대리 노현송 다음은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갑윤 의원님 나오셔서 국경일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울산 중구 출신 정갑윤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15 광복절은 일제로부터 주권을 회복한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광복은 자주적인 독립이라기보다는 주변 강국에 의한 불완전한 독립이었으며 그 결과 분단국가라는 비극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찬란한 우리 역사에 일본의 잔재를 남기고 국제화 시대에 거스르는 정서를 초래함으로써 국가의식 형성과 국가정책 지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확립하여 근대입법국가로서의 초석을 다진 중요한 날이고 이러한 건국정신은 눈부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거둘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단순히 일제로부터 주권을 찾은 45년 8월 15일보다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48년 8월 15일을 기념하자는 취지에서 광복절을 건국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노현송 정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곤 의원 대표발의의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법률안은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법이 되겠습니다. 개천절 경축행사를 의무화하고 각급 학교에 관련 교육을 권장하며 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를 세계한민족문화주간으로 설정하여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개천절이 명실공히 한민족의 경축행사가 되도록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제정안은 국경일 중 우리 민족의 특성과 개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개천절의 중요성과 의미를 감안하여 개천절 경축행사의 내실을 도모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개천절이 우리 민족의 단합과 자긍심 제고의 계기가 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봅니다.

겨레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전통은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세대의 당연한 책무라는 점에서 볼 때 개천절 행사가 한민족 전체의 관심과 호응 속에 범국민적인 축제로 치러짐으로써 민족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 확립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 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경일 중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는 제헌절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휴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알 수 있는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국민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 국경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헌절과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될 경우 그 의미가 현재와 같이 국민들에게 기억되고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국경일의 중요성과 의미를 고려할 때 제헌절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국경일 간 형평성 유지 및 존엄성 강화, 교육적 효과 등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노현송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별도 유인물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복절이라는 명칭이 건국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제는 건국기념일 속에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과거에 집착한 대 일본 복수관념이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국민의식 형성을 위해서도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개정안은 이런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며, 공청회 등을 거쳐서 신중히 검토하되 긍정적 측면이 많은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도의 보고서 장복심 의원, 양승조 의원, 장영달 의원 대표발의의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복심 의원안은 법률공포문의 전문에도 법안의 제출자를 명기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며, 양승조 의원안은 전자관보의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는 내용이며, 장영달 의원안은 법령 등의 공포 또는 공고문 전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자'라는 표현을 '공포 또는 공고일'로 변경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률안이 제출자의 뜻과 다르게 수정되어 의결되거나 대안 또는 위원회안으로 의결되는 경우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양승조 의원안은 종이관보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관보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규범과 현실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개천절 경축행사 및 한민족문화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鉉熙 委員 제가요……

○위원장 유인태 예, 최연희 위원님!

○崔鉉熙 委員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고 다른 거하고 같이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때 외국의 대체휴일제를 한번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심재철·신상진·김애실·이해봉·곽성문·이인기·황우여·심재덕·최경환·차명진·김태년 의원 발의)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이미경·박기춘·원혜영·이근식·문석호·김태년·노현송·이은영·강혜숙·김태홍·우상호·이목희·노웅래·정청래·김근태·김교흥·이인영·김희선·윤호중·김재윤·이광철·정병국·유기홍·박찬석·임종인·김형주·장향숙·오제세·강기정·안민석·윤원호 의원 발의)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김종률·이인기·박재완·박찬숙·배일도·엄호성·박형준·이한구·이명규 의원 발의)(의안번호 5430)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 의원 대표발의)(김애실·이해봉·차명진·이한구·박형준·신상진·권경석·배일도·이명규·이인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6116)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웅 의원 대표발의)(이재웅·이명규·이계진·이상배·김병호·류근찬·이성권·정종복·김정권·박계동 의원 발의)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홍문표·이주영·안영근·김용갑·양승조·김영덕·김학원·엄호성·유기준·문석호·박형준·정형근·김홍업·최인기·서갑원·신중식·이낙연·김성곤·이영호·유선호·남경필·심재엽·안경률·이인제·권선택·허천·김병호·김양수·이상열·박세환·황우여·이진구·정갑윤·이강두·주승용·우윤근·채일병·최연희·박상돈·김명주·김교흥·조경태·김재경·박희태·김정권·문병호·정의화·최구식·안홍준·권경석 의원 발의)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이근식·최규식·박희태·김기춘·장복심·우제항·이강두·이주영·이윤성·박상돈·우제창·노현송·서재관·강봉균 의원 발의)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정두언·김정권·김재원·차명진·이경재·이재오·배일도·박상돈·박형준·진수희·이성권·공성진·나경원·김애실 의원 발의)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문희상·민병두·김희선·노현송·윤호중·김태년·전병헌·임종석·배기선·이경재·정성호·김교흥·김재윤·김혁규·김진표·강성종·유인태·김동철·김선미·김명자 의원 발의)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2시26분)

○위원장 유인태 그러면 다음 제17항~제26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장관 나오셔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세 세율을 조정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및 서민 생계수단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하여 일정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조정하여 외국법인

들이 과점주주 비율을 악용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둘째,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분 재산세를 같은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건축물이 천재 등으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대체 취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생활 기반의 회복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넷째,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기준일을 사업 시행 인가일에서 정비구역 지정일로 변경하여 구역 지정 이후에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주택 등을 취득하는 부재지주에 대하여도 비과세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태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9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철 의원, 이미경 의원, 김애실 의원, 이재웅 의원 대표발의의 지방세법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명단공표라든지 신용불량자 등록 등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등 현행 제도로도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채권이라든지 조세채권 등과의 형평성, 소멸시효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현행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등록세에 대한 부담으로 법인화를 하지 못하고 임의단체에 머무르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법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예술법인 설립 등기의 경우에는 대도시 지역 내 법인 설립 시 적용되는 등록세 3배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예술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배제는 현재도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김애실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김애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먼저 발의된 법안을 1안, 뒤에 발의된 법안을 2안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동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제조업 분야가 육성되어 왔으나 서비스업종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토지보유세 부담이 제조업은 낮고 서비스업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안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호텔시설업의 토지를 종전의 별도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하여 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며, 제2안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조세 부담을 완화하여 글로벌 물류기업의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물류시설용 토지를 현행 별도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로 전환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중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조업과 비교하여 세제 혜택이 미흡하였던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관광호텔용 토지와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도입 여부는 분리과세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고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웅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재웅 의원안은 재산세 납기가 하반기 7월, 9월에 편중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효율적 예산 집행이 어렵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하반기에 집중되므로 효율적 예산 운영 및 보유세 부담의 하반기 집중 방지를 위해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2월 1일로 하고 납기를 상반기 3월, 5월로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이 안에 대해서는 2004년 보유세 개편 시 당해연도 공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가격 공시일을 종전 6월 30일에서 5월 31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의 과표인 주택가격 등의 공시일정을 고려할 때 당해연도 공시가 적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동산가격 변동에 능동적 대응이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홍문표 의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 중단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화력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권을 행사하고, 세율은 1㎾h당 0.5원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두언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법률안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두언 의원 대표발의안은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법적 업무인 자본금 출자 등 변경등기를 할 경우 등기업무를 수행하여야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번잡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사 등 변경등기에 대해서 지방세법상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포함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부, 정부 측에서 우려하는 정부투자·출자 기관과의 형평성이나 절차의 간소화 문제는 관련 입법 조치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지방세법 자체의 해석상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자본금 출자·증자 등 변경등기에 대해서 국가 등의 행위로 의제하여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식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 감면을 확대, 현행은 50%입니다마는 80%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 등 수익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다른 유사 비영리법인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판례가 장학사업을 위한 사무실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임대용 부동산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장학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종교단체·종교법인이나 학교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으며, 2005년부터 시행된 종부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이의 현실화에 따라 장학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 50% 감면효과가 사실상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개정안의 취지와 같이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의 법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비영리공익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6년 보유주택 442세대에 대한 종부세 1억 3000만 원)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는 건설교통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아서 저소득 무주택자인 영세민에게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2006년 12월 말 현재 국내에 508세대, 해외에 516세대 등의 주택을 분양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은 현재 취득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하고 있으며,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낮은 세율로 과세함으로써 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있으므로, 개인 등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감면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동 연합회가 공익 목적으로 취득·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 무주택자인 영세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연합회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재산세 등 세 부담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별도 보고서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첫째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 이상인 자에서 50%를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분 재산세 징

수교부금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셋째, 건축물이 천재 등으로 멸실될 경우 다른 건축물을 대체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비과세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사업시행인가 기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지정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인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7.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덕 의원 대표발의)(김영덕・김기현・이인기・심재철・김용갑・한광원・박재완・김광원・이방호・조일현・이상배・김명주・김재원・김재경・권경석・안상수・신중식・이영호・김낙성・안명옥・김우남・김충환・강기갑・박승환 의원 발의)

28. 農漁村道路整備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김태홍・강기정・신학용・박영선・박상돈・장경수・심재덕・서혜석・노현송・이시종・강창일・정성호・최규식・김태년 의원 발의)

29. 農漁村道路整備法中改正法律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정성호・조경태・박재완・이철우・황우여・임채정・유재건・김재홍・복기왕・신기남・정장선 의원 발의)

30.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이인기・김재원・김정훈・김희정・안상수・안택수 엄호성・유기준・이강두・정갑윤・정문헌 의원 발의)

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임인배・신상진・이상배・안상수・정갑윤・김성곤・김태환・김양수・안홍준・김광원・박찬숙・김영숙 의원 발의)

○위원장 유인태 다음 제27항～제31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춘 의원님, 김영덕 의원님, 정성호 의원님 대표발의의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중간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 2월 4일 제정된 바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의 통합・개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시계획법으로 표기되어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로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현행법의 시행령 제7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참작사유와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계획의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통보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는 도로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한 규정은 현행

과 같이 시행령으로 운영하고 이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도로사업계획 승인의 참작사유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현행과 같이 시행령에 위임하여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안과 같이 법률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영덕 의원 대표발의안도 정성호 의원안과 유사하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이인기 의원 대표발의와 임인배 의원 대표발의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 부분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인기 의원안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고, 두 번째 공무원 등 서명요청활동 금지대상자 및 낙선자 등은 청구인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임인배 의원안은 첫째, 선출직 지방 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각하사유를 추가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적 정치·사회·문화 환경상 주민소환 청구 남용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사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안심사 과정에서 주민소환 청구사유와 관련하여 개정안보다는 소환 청구사유를 넓게 인정하여 전문성의 부족 등 능력의 결여, 위법·부당한 사무처리,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의 손해야기 등도 일반적 청구사유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소환 청구사유에 과도한 제한을 가할 경우 현행 주민소환제도가 청구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을 뿐 다른 청구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鉉熙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유인태 최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鉉熙 委員 장관께 묻겠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말입니다. 이것 소환 청구사유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그게 원래 법 제정할 때 좀, 그러니까 직무유기 직무태만 권력남용 세 가지를 예시 정도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직무유기냐 권한남용이냐 그런 것을 전부 사법부 판단을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또다시, 예를 들어서 직무가 정지된다든지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주민소환이라는 민주적인 장치하고는 상반되고…… 저희들이 각국의 입법례를 다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열거해서 예시한 것이 미국 앨라배마주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입된 지가 1년도 안 되고,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해 보고 이게 남용될 우려가 있으면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崔鉉熙 委員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 사유가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많습니다. 하남시의 예를 봐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남시 재정상황도 고려하고 또 님비현상이 강한데도 그래도 광역화장처리시설을 만들려고 한 것인데, 그것으로 봐서는 사유가 너무 불명확해서 모든 게, 이렇게 걸어도 되고 또 저렇게 걸어도 되고 너무 사유가 광범위하고 구체성이 없다…… 지금 헌법소원 제기되어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제기해 놓았습니다.

○崔鉉熙 委員 만일 그렇게 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면 당연히 고치겠지만 너무 사유가 광범위하다, 구체성이 약하다…… 원래 사법부 판단을 받

는 것은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법원에서도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재에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사유는 행자부 자체에서 좀더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崔鉉熙 委員 아니, 헌법소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는가 그것보다는 행자부 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 돼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은 하남시민들이…… 이것이 결국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崔鉉熙 委員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정책사업이 지금 도마에 올랐는데 하남시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결과도 좀 지켜보고요. 이런 좋은 정책들이 결국 주민소환제도라는 투표절차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제한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건전한 주민들의 선량한 판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소환제도가, 원래 민주적 통제절차 아닙니까? 그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제도를 조금 더 존속시켜 본다든지 이런 저런 점들을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崔鉉熙 委員 지방에 가면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찬반이 항상 엇갈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그렇습니다.

○崔鉉熙 委員 양쪽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원래 목소리 큰사람들, 반대하는 측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수긍하는 다수는 서명을 안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볼 때 이것이 만일 그대로 존속된다면 앞으로 혐오시설을 들여오려고 하는 단체장들이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 점은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3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길 의원 대표발의)(권영길・강기갑・최순영・임종인・현애자・최성・심상정・노회찬・천영세・단병호・이영순 의원 발의)

3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염동연・강창일・노영민・정동채・변재일・조성래・최규식・박기춘・김동철 의원 발의)

34.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김정권 의원 대표발의)(김정권・신상진・정갑윤・이인기・김학송・김석준・이계진・이성권・이계경・박세환・김명주・이명규・김양수・김애실・한선교 의원 발의)

3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이인기・이경재・안상수・정문헌・이계경・신상진・고조흥・김정권・유재건・김애실・임해규 의원 발의)

3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김정권・박계동・허천・권경석・신상진・곽성문・이주호・허태열・이해봉・이강두・고조흥 의원 발의)

3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민병두・이경숙・김재윤・선병렬・박영선・조성래・박찬석・유재건・김현미・강기정・윤호중・안민석・서혜석・김영주・임종석・김희선・이광철・김태년 의원 발의)

3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정권・이인기・안상수・김재원・서상기・이명규・엄호성・김양수・최성 의원 발의)

3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임종인・강기갑・강창일・권영길・김태홍・노회찬・단병호・심상정・이영순・정청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4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이경숙・민병두・안민석・윤호중・김교흥・이미경・유기홍・최재성・이인영・이은영・정봉주・변재일・정성호・정청래・김춘진 의원 발의)

4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시27분)

○위원장 유인태 다음 의사일정 제32항~제41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정권 의원 나오셔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권 의원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

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민주화된 이후 출범한 정부는 사실상 정부기구를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이를 통하여 공공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각종 규제의 철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큰 정부를 부단하게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경우 2006년 12월 말까지 공무원 수가 95만 7208명에 달해서 국민의 정부 임기 말인 2002년 12월 말 현재에 비해 6만 7215명이 늘어난 실정이고, 특히 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 정무직공무원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확대된 정부조직과 비대화된 인력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 등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정부기능의 통폐합 등을 통하여 18부 4처 17청인 중앙행정기관을 12부 4처 16청으로 전면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총리 2인을 두며 부총리는 경제산업부장관과 과학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토록 하고, 둘째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장의 사무와 행정자치부장관 소관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조정처를 두고 국무조정처에 장관 1인과 차관 2인을 두며, 셋째 국무조정처장관 소속하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경찰청을 두고, 소방, 방재, 민방위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소방방재청을 두며, 넷째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지원처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다섯째 행정 각부를 18부에서 12부로 축소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안의 상세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7월 24일, 10월 19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도 있는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방만한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을 만들기 위한 정부조직법이 전부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관 나오셔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반부패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청렴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부패방지업무와 공직윤리업무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 부·처·청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기관 및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관할을 행정자치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로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직윤리업무 기획·총괄 기능을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안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와 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상단 권영길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공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통합적·유기적 집행을 위해서 외교통상부장관 소속하에 대외원조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와 같이 재경부 외교통상부 등 11개 부처의 업무에서 대외원조 기능을 분리하여 외교통상부 소속의 대외원조청으로 단일화하는 경우에 공적개발원조(ODA) 업무의 통일적·효율적

수행이 가능해지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정책과의 연계의 어려움과 개별 부처별로 보유한 전문인력의 활용 한계 등의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상 국무조정실장이 정책조정, 정부업무평가, 규제개혁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고 차관회의의 의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충실한 보좌 및 국무회의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국무위원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에서와 같이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위원으로 하는 경우 업무 수행의 현실 반영 및 그 위상 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강화하는 측면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국무조정실장이 국무총리 보좌기관으로 존속하면서 국무위원으로 보임될 경우 헌법상의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심의 및 부서권 등의 지위를 갖게 되는 점 등 이중적 지위에 따른 법률상, 역할 수행상 마찰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김정권 의원 대표발의의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 하단 부분입니다.

김정권 의원 발의안은 확대된 정부조직과 인력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유사한 정부기능의 통폐합 등을 통해서 중앙행정기관을 12부 4처 16청으로, 현재는 18부 4처 17청입니다마는, 축소개편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개정안의 구성 개요를 보면,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체계는 4개 장에 걸쳐 총 3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조항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장은 경제산업부 등 행정 각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4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원발의 정부조직법 전부개정안에 27개 조항이 그대로 또는 일부 내용이 수정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역대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경과와 노무현 대통령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이 법안에서는 국무조정처 설치, 경제산업부 설치, 과학교육부 설치, 문화생활부 설치, 농림해양부 설치, 사회복지부 설치, 환경자원개발부 설치, 고용노동부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박찬숙 의원, 이성구 의원, 송영길 의원, 한선교 의원, 임종인 의원, 이경숙 의원, 정부가 각각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첫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임용 비율을 확대하여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취업제한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정원에 대해 5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위원회의 위원 정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의 출자·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재출자·출연기관·단체 등 임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추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개정안과 같이 정부투자기관 등의 재출자·출연 기관 등의 임원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할 경우 모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 형성 및 관리와 관련된 윤리성을 확립하고 사회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은 있겠습니다.

다만 정부투자기관 등의 출연·보조 비율이나 비중을 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재출연·출자 등의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공직유관단체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게

되며 또한 공직과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이들 단체의 임원들에게까지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기본권 제한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후보자가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할 등록대상재산신고서의 제출 대상자를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외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배우자의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등에게까지 재산공개를 확대할 경우 공개 친족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부실한 재산신고에 대한 책임규명의 어려움도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퇴직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과 같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을 확대할 경우 퇴직공무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제도를 없애고 고위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취업제한 대상에 영리사기업체를 대리하는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을 추가하며 업무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 등의 종류와 규모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퇴직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취업제한대상 업체 등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퇴직공무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유권자에게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청렴성 도덕성 등에 대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재산신고 및 공개하게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예비후보자의 경우에까지 재산등록을 확대하고 더욱이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등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경우 공개되는 친족 범위가 광범위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겠으며, 또한 부실 재산 신고 등에 대한 책임규명의 어려움도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제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제출안은 부패방지업무와 공직윤리업무의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던 공직윤리업무의 기획·총괄 기능,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 업무 등을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재산등록업무,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설치, 재산등록 및 공개 등 취업제한 등에 관한 기획·총괄 등의 업무를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담당하던 공직윤리 관련 기획·총괄 업무 등을 국가청렴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제출안은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업무의 통합을 통하여 반부패 업무를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다만 공직윤리업무 소관을 변경하려는 정부 목적이 합리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부패방지법에 의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 등과 관련하여 다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淇春 委員 위원장님!

○위원장 유인태 김기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淇春 委員 지금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청렴위원회에다가 넘기겠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장관께서 잘 아시지만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인사에 관한 여러 가지 통할권을 인사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도 아닌 인사위원장에게 이것을 줌으로써 당부당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추궁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듯이 국가청렴위원회로 이관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행자부가 한다고 해서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인사 저리 주고 또 재산등록업무 이리 주고 또 지방자치에 관한 것은 지방에 주고 이러면 행정자치부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 말하자면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이 아닌 청렴위원장한테 이것을 줘서 더군다나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공무원의 재산등록까지도 여기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부·사법부·입법부까지,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물론 각자 수행하겠습니다마는 종국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재산등록 업무, 반부패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金淇春 委員 그러니까 재산등록 업무를 전부 거기서 한다고 하면 지금 관행은 사법부에 대한 사법권 독립 하면 재판업무의 독립도 중요한 독립의 요소이지만 법관 등 사법부 공무원의 인사의 독립도 사법권 독립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행정처에서 하고 있는 인사에 관련된 중요한 재산등록 업무를 저리 넘긴다, 또 국회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입법부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업무도 거기에서 하고 당부당을 거기서 심사하고 한다,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현재 이 법 속에는 그런 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金淇春 委員 안 들어 있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업무를 여기서 통할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장관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종국적으로는 청렴위원회가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의 재산등록 업무를 담당하겠다 하는 취지가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그것은 물론 법을 바꾸면 가능한데 현재 삼권분립의 원칙상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金淇春 委員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행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업무만을 청렴위원회에서 가져가겠다 그 뜻인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현재 그렇습니다.

○金淇春 委員 그게 분명합니까? 청렴위원회의 누가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까?

○국가청렴위원회사무처장 장태평 예, 그렇습니다.

○金淇春 委員 다른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의 업무까지 갖겠다 그것은 아닙니까?

○국가청렴위원회사무처장 장태평 아닙니다.

○金淇春 委員 그것은 아니더라도 아까 내가 중앙인사위원회를 예로 들었지만 이 위원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렇게 인사권에 관한 모든 것을 행자부로부터 갖고 오고 행자부장관도 책임 안 지고 인사위원장도 국무위원이 아니니까 잘못한 경우에 국회로부터 해임건의 대상도 안 되고 또 법안 제안권도 없고 이런 변칙적인 위원회에다가 이 권한을 자꾸 주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소위원회 검토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기를 바라는 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지금 경찰관의 경우에는 몇 급 이상 등록하고 있지요? 실무진 압니까? 경찰관의 경우에 어떤 계급……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경사 이상입니다.

○金淇春 委員 경사라면 시골 파출소 소장도 안 돼요. 경위 정도 돼야 시골 지구대장, 파출소장 하는데 경사가 만날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술 취한 사람들한테 두들겨 맞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무슨 대단한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 재산등록을 일일이 시키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15만 경찰 중에 경사 이상이면, 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재산등록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낭비됩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재산 등록하는 때가 닥쳐오면 통장을 대비를 하고 은행에서 잔액 무슨 증명을 떼고 이게 보통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한 위치에 있는 정무직, 적어도 처음에는 장차관, 국회의원들에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청렴하게 한다고 해서 심지어 총경, 경찰서장도 아니고 파출소소장도 안 되는 경사를 시키고 또 국세청 같은 데서 세금 관계 부정이 있다 해서…… 국세청은 몇 급 이상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7급 이상입니다.

○金淇春 委員 7급이면 옛날에 주사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6급이 주사이고 5급이 사무관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주사보입니다.

○金淇春 委員 주사보까지 재산등록을 시키고 과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저는 이런 것 할 시간이 있으면 다른 일에 국가적 역량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단 실무진들이 부정이 있으면 그때그때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징계해서 하면 되지 재산신고로 괴롭히는 것 차제에 고치는 게 필요하다…… 장관께서도 그동안에 이루어진 일들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해 보니 과하다 싶으면 과감하게 줄이는 것, 지금 형법 같은 데도 보면 곳곳에 사형이에요. 원래 사람 죽이는 것 사형하는 게 맞지 돈 좀 횡령했다고 사형, 이것 중국에서는 합디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엄벌주의로 겁주려고…… 그러나 선진민주국가에서 국고 좀 횡령했다고 사형, 뇌물 좀 많이 받았다고 이런 것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였거나 가족을 죽였거나 살인에 사형이 있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이와 같이 중벌주의, 과도한 규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깊은 검토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소위에서 잘 다루겠습니다마는 국무위원이 아닌 행정 각부도 아닌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조직체계상의 문제 이런 점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공직윤리 업무와 반부패 업무를 통합해 가지고 보다 깨끗한 사회를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통합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재산등록 공개 범위는 장차관 등 일부 직에 한정됐습니다마는 또 확대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에 밀려서 사실 너무 과도하게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좀 좁아졌다가 크게 확대돼서 이제는 그 범위의 적정성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상위직은 더 넓혀가야겠지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은 시·도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서 그것은 금년부터 부단체장 이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행자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직윤리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적정성에 대해서도 여러 면으로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태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정부조직법하고 공직자윤리법 다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유인태 예.

○유기준 위원 먼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권영길 의원이 제안한 대외원조청 신설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1위, 12위 정도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나라이고 개발도상국 외교에 있어서는 이런 ODA 원조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전의 한국의 위상에 맞춰 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도국 외교에 있어서 다른 비슷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경제 위상에 맞는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원조를 해 주고도 그만한 효과를 못 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원조청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왜냐하면 결국은 정부가 이런 ODA를 함으로써 나중에 과실을 얻게 되는 경우에는 민간 부분에서, 특히 기업부분에서 얻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순수히 관 중심으로 하는 대외원조청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민관이 힘을 합쳐서 얻는 기관을…… 어떤 게 좋을까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지금 KOICA라고 국제협력단이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KOICA를 하긴 하되 이게 현재 기능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제고시키든지 또 관의 힘을 그 안에 실어준다든지, 아니면 ODA를 제공하면서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한다고 그

러면 나라 경제 위상에 맞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전향적이고 좋게는 생각합니다마는 이왕 하는 김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잘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님께서 국가청렴위원회의 공직자 등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국가청렴위가 지금 현재 국가 청렴도의 향상 및 부패방지에 대한 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게 만일에 그 권한을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주식백지신탁 심사도 하고 또 공직자 윤리 중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체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고 그다음 청렴위의 존재 목적이 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미리 예정된 일이 발생하기 전에 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존립 목적하고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더 지적한다면 이 안에 들어갈 공무원의 범위가 행정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아마 나중에 종국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같은 독립적 기관까지 다 주식백지신탁심사도 하고 공직자 윤리심사도 하면서, 그런데 이 기관은 또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삼권분립의 목적에 조금 어긋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처음에 제도 출발은 다들 적게 출발합니다마는 이렇게 시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는 고쳐도 늦으니까 처음부터 어떤 범위 내에서 이런 주식백지신탁심사가 이양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석 위원 존경하는 김기춘 위원님, 유기준 위원님 지적한 내용과 연계해서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렴위원회의 기능은 사정업무다 하는 것은 이미 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각종 직무분장 규정에 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물론 재산등록을 포함한 윤리업무에 관한 기획, 정책 수립 등등도 하겠지만 동시에 집행 업무도 윤리위원회에서 다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그렇습니다.

○권경석 위원 기획, 정책 입안, 집행업무까지 다 관장하는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청렴위원회의 기능은 정부를 비롯한 집행기관의 비리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사정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그렇습니다. 사후 처벌적 기능 또 사전 예방적 기능도 같이 하고 있지요.

○권경석 위원 그러니까 직접 정책을 입안하거나 또는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업무보다는 집행되어 가는 과정이나 그 결과에 대한 사정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후 처벌기능, 물론 사전 예방기능도 있겠지요. 그런 것을 두도록 하는 것이지 집행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기구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그렇습니다. 지금……

○권경석 위원 그리고 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결국 위원회는 합의제 기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합의제 기구에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정부조직의 원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권경석 위원 이것도 특별한 경우에 설치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는 윤리업무 중에서 재산등록업무를 똑 떼어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은 청렴위원회 조직의 직무 성격상 안 맞고 또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는 윤리업무의 한 부분을 떼어 간다면 백지신탁위원회도 결국 연계된 업무인데 이게 분리됨으로 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백지신탁업무도 갖고 갑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주식백지신탁 업무는 전 기관에, 그러니까 입법·사법이 다 관련된 그런 제도적인 것입니다.

○권경석 위원 이번에 이것도 청렴위원회에서 가져가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주식백지신탁, 청렴위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경석 위원 한꺼번에 가져갑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권경석 위원 그러면 백지신탁위원회는, 결국은 윤리위원회 등록업무도 마찬가지지만 비리나

부정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조사 의뢰를 해야 되지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권경석 위원 그러면 청렴위원회에 가져가면 청렴위원회에서 또 수사 의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청렴위원회에 가져간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운용 자체가 본질을 도외시한 파행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사정·부패방지·부정방지 업무를 추진하는 기구 같으면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지 이런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업무를 가져갔을 경우에 청렴위원회가 잘못한 업무에 대해서는 결국 또 사정기능을 수행하는 청렴위원회가 수사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예.

○권경석 위원 그러면 청렴위원회 설치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직의 원리에서도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다른 헌법기관, 국회나 대법원의 경우는 그대로 운용을 하는데 정부의 경우에만 똑 떼내 가지고 운용을 한다는 것은…… 왜 이런 변칙·파행을 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행자부장관님은 어떻게 법안을 제출했는지 모르시겠지만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점은 다 간파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 답변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참 곤혹스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법안소위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기능을 왜곡시키고 파행을 자초하는 이런 제도개선을 왜 합니까? 이런 입법조치를 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소신 있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태 권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할 동안 잠시 좌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직원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

42.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3.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경률 의원 발의)(안경률 의원 외 19인 발의)

45.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최인기·김효석·이상열·신중식·권선택·박상돈·안상수·정성호·최규성·안명옥·이근식·장복심·신학용·채일병·고조홍·주승용·문학진·강창일·우윤근·서갑원 의원 발의)

(16시07분)

○위원장 유인태 이어서 제42항~제45항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장관 나오셔서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 및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선 및 도선사업에 대한 업무 중 승선정원의 기준 허가 등 16개 사무를 시·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사무로 이양하고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삭제하여 청년고용을 증진시키는 한편 사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보완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이양대상사무로 결정한 동법 제11조 승선정원의 기준허가 등 16개 사무를 시·도지사 사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사무로 이양하고,

둘째, 동법 제6조 미성년자 면허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셋째, 동법 제9조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 중 제1항 제6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삭제하고 대신 동법 제27조 제1호~제7호에서 규정한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또한 동법 제27조 제8호를 삭제함으로써 관할 관청이 안전운항 등을 위한 조치 시 그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포괄적인 재량

행위를 제한, 구체적 기준에 따라 조치토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풍수해보험 요율 산정의 기초자료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주체가 일선 시·군·구로 되어 있어 온정적 지도 작성의 폐해가 우려되어 작성주체를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여 작성 방식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둘째,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 및 관리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셋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은 가시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이 맡고 있는 유·도선 사업 관련 업무 중에서 유·도선 사업의 면허취소, 안전검사 등 16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에 이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유·도선 사업의 면허취소나 안전검사 등의 업무는 그 성격상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보고서로 되어 있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도 정부가 제출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주체를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소방방재청장으로 변경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과 통합·관리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풍수해보험관리지도 관련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어려운 법문 표현을 간결하게 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로 되어 있는 소방기본법 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안건은 안경률 의원의 발의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에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방방재청장이 연합회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국 또는 시·도 단위의 연합회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의용소방대 상호 간의 협력관계와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나아가 의용소방대 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연합회 설립과 관련해서 현행 소방기본법은 의용소방대의 설치·조직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현재 16개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조례로 연합회의 설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현행 제도에서도 일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는 의용소방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행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권을 부여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안 제39조의2제2항을 시·도연합회의 조직·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는 시·도의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인기 의원 대표발의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산업의 현황 및 법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8장 3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최근 건축물 및 산업시설의 고층화, 지하화 추세로 인해서 화재발생 시 진화 및 피난이 곤란해짐에 따라 대형재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바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한 첨단소방기기 및 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소방산업의 현황을 보면 전체 소방산업체 중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업체수가 약 15%에 불과하고 회사가 설립되어 10년 이내에 도산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약 86%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여 소방제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보다는 외국제품을 수입하거나 단순히 모방하여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 미국 등의 소방제품에 대해서는 기술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 제품에 대하여는 가격경쟁력이 취약하여 국내의 시장 및 해외 수출시장이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정안은 소방산업의 발전 및 첨단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소방제품을 개발·보급하며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

기타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선 및 도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유·도선 사업면허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 방재청장께 질의할게요.

실제 유선이라고 그러면 낚싯배고 도선이라면 관광객을 안내한다든지 큰 배를 안내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요?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유선이 주로 관광·유람선이고요, 도선은 일반 지역주민들의 교통수단입니다, 건너는.

○유기준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부정기적이고 일반적으로 어떤 영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씩 신문지상에 보면 이런 유·도선 때문에 사고가 나 가지고 낚시객이 실종됐다는 둥 그래 가지고 장식하고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주한테 책임을 물을 경우 막막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주들이 올바로 보험도 가입 안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해서 과도한 행정규제를 가하는 이런 것을 해제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마는 이것을 영업주체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영업의 대상의 면에서 또 고객의 면에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유·도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좀더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유·도선 사업을 할 때 재산이 얼마 정도 있거나 아니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이게 국민 생활에 있어서 안전하게 영위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별다른 대책 없이 풀어 버린다고 그러면 오히려 큰일이 발생할 때 대책을 마련하기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유·도선업이 과거에는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근 한 10년 가까이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은 유·도선 업자들이 보험을 가입해 놓은 그런 상태고 해서…… 현재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미성년자의 취업이랄까 영업의 자유 이런 차원에서 좀더 그것이 우선…… 안전관리 문제는 별도의 문제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안전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단지 위원님 걱정하듯이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보상 문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

니다.

○유기준 위원 실무의 예를 총장께서 한번 알아보셔야 될 일인데 책임보험 비슷하게 1인당 한도 금액이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책임보험이 있고 또 거기를 넘어서는 것은 대인보상으로 해서 무제한으로 하는 그러한 두 가지 보험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유·도선 업자들이 가입하는 것은 아마 책임보험에 그칠 겁니다. 그래서 무제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1인당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왕왕 사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명백히 하시고……

지금 다른 관련 법령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 대인적 효력이 좀 약한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런 것은 일반 개인의 생명이라든지 신체에 대해서 크게 영향이 없는 것들인데 여기 유선 및 도선사업법은 고객의 생명이라든지 안전에 상당히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바로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태 위원장, 정갑윤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보험이라든지 또 사업의 자격을 제한하면서 여러 가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한 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그런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鉉熙 委員 같은 의견입니다.

유·도선 사업면허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지금 예상하기를 몇 세부터 예상하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지금 20세 미만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예.

○崔鉉熙 委員 몇 세부터 예상하는 거예요? 몇 세 정도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연령제한은 없지요, 현재.

○崔鉉熙 委員 지금 ‘미성년자’ 이러면 20세 미만자는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예방안전본부장 이석환 그렇습니다.

○崔鉉熙 委員 그러면 다 푼다?

그래서요, 이거 푸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지방에 가면 강 건너에서 배에다 줄을 당겨 가지고 강 건너 주고 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도선이지요?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예.

○崔鉉熙 委員 그런데 여기 보면 미성년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특정한 영업에 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인정한다”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는 우선 부모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법정대리인이.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그렇지요.

○崔鉉熙 委員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결격사유에 미성년자를 그대로 두고 예외규정으로 “제 몇호 몇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고 일정한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보험에 가입한 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넣어야 될 겁니다.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현재 민법 8조에도 보면 법정대리인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崔鉉熙 委員 그런데 이렇습니다.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것은 일종의 처분행위입니다.

미성년자가 가게에 가서 연필 한 자루 사고 물건을 사 오는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애들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일일이 부모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추정적인 승낙이라든가 아니면 학용품 사는 것은 법정대리인의 통상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봐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만일, 예를 들면 부모 돈을 훔쳐 갖고 가게에 가서 물건을 샀다 이럴 경우에 부모가 “나는 이 매매를 동의한 적이 없다, 승낙한 적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 거래는 취소되고 그 주인은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미성년자 보호자가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동석작배라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석작배, 그러니까 술을 따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위험업에는. 그러나 18세인 경우에는 예외로 근로능

력이 있어 유흥업점에서 심부름하는 정도는 허용하는 겁니다, 그게. 그 예외규정으로 18세로 한정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성년자 다 풀어? 그러면 10세 된 사람도 부모가 '야, 지금 나 바쁘니까 니가 가서 대신 좀 도선 저거를 좀 해라' 그것 되겠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발상에서 이런…… 이 규정을 실무자 누가 만든 거예요?

○소방방재청예방안전본부장 이석환 담당 본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청년취업자 확대를 위한 일제감사의 결과 취업제한을 한다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정부방침으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崔鉛熙 委員 감사원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상하는 게, 20세 미만은 미성년자에요. 그러면 예상하는 연령층이 어느 연령층이냐 이거예요. 이 법 잘못 만들었다 큰 사고가 날 경우에 입법한 의원들 책임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성년자를 삭제하지 말고 그냥 두되, 몇 세 이상, 적어도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린애는 도선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6세 정도, 16, 17, 18, 19이 정도. 그러니까 '몇 세 이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한도의 보험에 가입한 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내용을 문제 안 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도 그렇지 거기도 법하는 사람들 있을 텐데 무조건 미성년자 삭제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것 한번 보세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뭐예요? 읽어 보세요, 감사원 지적사항.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적했다면 그 사람들 웃기는 사람이에요.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한번 읽어 보세요. 법이라고 무조건 막 만들고 감사기관에서 뭐라 한다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읽어 보세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뭔지. 실무자들 안 가지고 있어요?

○소방방재청예방안전본부장 이석환 원문은 제가 없습니다. 2005년 5월 23일 청년고용시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을 받아 가지고……

○崔鉛熙 委員 감사원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그 감사원의 지적사항 사본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규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성년자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는 무조건 다 취업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미성년자 제한하는데 무조건 미성년자를 제한하지 말고 일정한 조건에서는 취업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취지예요, 감사원 지적사항이. 삭제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무조건 삭제하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소방방재청이, 위험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대처하는 기관이 그런 발상을 해요?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인 대책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崔鉛熙 委員 그렇게 하시고 미성년자 삭제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완하면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해결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전국 단위 시·도에 의용소방대연합회를 조직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시·도는 이미 조직되어 있습니다.

○崔鉛熙 委員 그런데 설립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을 만드는데 시·도의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듯이 시·도 조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해도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崔鉛熙 委員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 것은 좋겠다 이 말이에요.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근거를 만들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중앙조직은 필요합니다.

○崔鉛熙 委員 그러니까요. 제가 의용소방대는 많이 만들수록 좋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2000년도 4월초에 산불 났을 때 보니까 의용소방대 아니면 일을 못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의용소방대는 이렇게 도와주면서 시·도에 있는 소방본부들은 중앙에서 한 푼도 지원 안 하잖아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 근거를.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근거를 만들어 줘야 예산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방방재청에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단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도 소방본부에 지원해 줘야지 소방장비도 나아질 거고, 근거가 없어서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현재 의용소방대조직이 시·도 조직인 지방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가재정 지원보다는 시·도 자치재정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崔鉉熙 委員 실제로 지원이 안 되잖아요.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조례에 의해서 전국에 한 350억 정도 금년의 경우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출동수당비 이런 것들입니다. 출동수당하고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일부 지원을 350억 정도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崔鉉熙 委員 의용소방대?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그렇습니다. 시·도 조직까지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崔鉉熙 委員 소방서 공직자들은……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그것은 중앙지원이 없지요.

○崔鉉熙 委員 자녀학비 받고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일반 공무원들 말입니까?

○崔鉉熙 委員 일반 소방직들요.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의용소방대는 별도의 자원봉사조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장학금하고 출동수당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崔鉉熙 委員 장학금을 주는 것은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일반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그것은 지원이 없습니다.

○崔鉉熙 委員 그러니까 정식으로 있는 사람들도 같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그것하고는 법이 조금 다른 체제입니다. 이 법은 의용소방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崔鉉熙 委員 무슨 취지인지는 아시죠?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취지는 알겠습니다.

○崔鉉熙 委員 그것부터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해야지. 이것부터 거꾸로 해결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기준 위원 다 했습니다. 45번까지 다 했어요.

○위원장대리 정갑윤 다음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경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것 감안하면 돼요.

○위원장대리 정갑윤 이것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46.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강창일·박상돈·심재덕·양형일·이인영·홍미영·이용희·정장선·문학진·우제창 의원 발의)

4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심재덕·안상수·이광철·신상진·강창일·오제세·유선호·신중식·이시종·이기우·노현송 의원 발의)

48.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 의원 대표발의)(강성종·송영길·김동철·박상돈·최성·김선미·권선택·유재건·김명자·배기선·문희상 의원 발의)

49.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성종 의원 대표발의)(강성종·송영길·김동철·박상돈·최성·김선미·권선택·유재건·김명자·배기선·문희상 의원 발의)

5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양형일·강창일·김동철·김태홍·노영민·류근찬·박기춘·변재일·염동연·이목희·이상열·조성래·원혜영·채일병·최규식 의원 발의)

(16시32분)

○위원장대리 정갑윤 이어서 의사일정 제46항~제50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법안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5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장인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이 안건은 박기춘 의원, 심재덕 의원, 강성종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되겠습니다.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방재산업 등의 용어 정의 및 방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입니다.

개정안은 방재산업·방재산업체·방재제품 등 방재산업 관련 용어를 명확히 하고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방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재산업체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풍수해·지진 등의 분야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방재산업체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장으로 하여금 우수한 방재산업체 및 방재제품 등을 인증할 수 있도록 하여 방재산업체 및 방재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인증된 업체에 대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금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구축하여 향후 방재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인증제도는 14개 부처 80개의 법적인증과 60여 개의 민간인증 등으로 난립되어 있어 2006년 8월 18일 산업자원부에서 19개 부처와 공동으로 표준인증혁신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현재 국가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인증제도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도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우수자연재해저감기술에 대한 평가 및 지정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등 인센티브에 대하여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인증제도를 신설하기보다는 이를 개선·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국방재산업협회의 설립입니다.

개정안은 방재산업의 발전 및 방재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공동이익 도모를 위해서 한국방재산업협회의 설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재산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방재제품의 유통촉진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단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겠으나 방재산업협회는 현행법 제72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한국방재협회와 그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특수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신중을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심재덕 의원 대표발의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를 촉진·확대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고를 통해 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 강수량의 3분의 2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여름철은 홍수로 인한 피해가, 나머지 계절에는 가뭄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로·주택 등의 건설로 불투수 면적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현행 제도를 확대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우수의 저류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뿐만 아니라 환경부의 경우 비점오염 저감 측면에서, 건설교통부의 경우 대체수자원 활용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법률이 현재 기 존재하거나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등 여러 부처 소관의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되고 있는바, 각 부처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우수관리에 대한 규정을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일 의원 대표발의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소방공사협회에 대해서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특수법인으로 규정하고 이 협회로 하여금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및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와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및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기술과 관련

된 법인으로서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1월 24일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한국소방공사협회가 되겠습니다마는—에 위탁한다고 개정하였는바, 향후 이들 업무는 한국소방공사협회로 일원화되어 위탁·수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될 경우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와 신규로 특수법인화될 한국소방공사협회와의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갑윤 간사, 유인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동안 소방시공능력 평가업무가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한국소방공사협회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한국소방공사협회가 보다 많은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 전환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는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태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재협회가 이미 설립이 되어 있는데 방재산업협회를 또 별도로 설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 법에 의하면?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예.

○유기준 위원 그래서 하나는 공적 부분이고 하나는 사적 부분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좀 중첩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만 기능은 전혀 다릅니다, 현재. 방재협회는 방재 관련되는 전문가들 교육이라든지 또 그런 연구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산업협회는 주로 방재산업 육성에 관한…… 그런 기능에 차이가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서로 충돌이 있거나……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일어나지 않도록……

○유기준 위원 겹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예,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소방 진흥법인가요?

○소방방재청장 문원경 예, 소방산업……

○유기준 위원 소방산업 진흥법 그것은 제정법인데 별도 공청회 같은 것을 안 하시나……

○위원장 유인태 제정법은 소위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유기준 위원 법안소위에 너무 많이 넘기면, 법안소위도 힘든데…… 전체 상임위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유인태 소위에서 공청회를 하도록 됐고요.

○유기준 위원 아까 말씀을 안 하시길래 확인차 질의합니다.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고자 하오니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장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5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정갑윤·황우여·강기갑·곽성문·이인기·심재철·김정권·김영덕·유승희·단병호·권영길·노회찬·심상정·현애자·천영세·최순영 의원 발의)

5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신상진·공성진·정갑윤·박재완·유승희·이해봉·진수희·안상수·유재건·고조흥·김태년 의원 발의)

5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이성권·곽성문·김양수·김정권·김태년·박재완·박형준·양승조·이

경재・이계경・정문헌・정종복 의원 발의)

5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신상진・이성구・배일도・유재건・권오을・유기준・이인기・이성권・이계경・안상수・김기현・맹형규 의원 발의)

5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이상열・박상돈・김낙순・박기춘・이종걸・노현송・김영춘・홍미영・이인영・유선호・김혁규・양형일 의원 발의)

5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이재오・정종복・엄호성・유재건・전여옥・김정훈・김무성・유기준・김석준・배일도・정성호 의원 발의)

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김정권・이인기・안상수・김양수・김재원・서상기・이명규・엄호성・이성권 의원 발의)

59. 任用缺格公務員등에대한退職補償金支給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김동철・정성호・문희상・김재원・이인영・김선미・김부겸・김영덕・정갑윤・이상배 의원 발의)

(16시51분)

○위원장 유인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51항~제59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우리 정갑윤 의원님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최규식 의원님 제안설명도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이상 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권오룡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유인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청 결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의 상한을 확대하며 국민이 쉽게 법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소청심사위원회에 비상임위원이 위촉됨에 따라 비상임위원의 직무상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및 신분보장 규정 등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방법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상 질병에 따른 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이성구 의원 대표발의,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정부가 제출한 8건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갑윤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2계급 체계, 예컨대 연구관/연구사, 지도관/지도사로 되어 있는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을 폐지하여 직급을 단일화하고 연구관은 60세, 연구사는 57세로 되어 있는 정년도 60세로 단일화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단일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현행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업무분야 또는 연구・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마는—에 따라서 2계급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12월 기준 현원은 1만 1833명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그간 연구・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연구사・지도사를 중심으로 과도한 승진경쟁에 따른 연구업

무 소홀, 승진 후 타 보직 부여 등에 따른 전문성 저하 등의 이유로 직급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은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경우에 현재 계급 간의 학력·기술·능력·직무 난이도 등에서 별다른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고 직무 특성상 계급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직급을 단일화함으로써 연구직의 전문성 강화 및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직급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먼저 단일화에 긍정적인 입장이 있으며 반면에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의 직급 단일화 문제는 81년 이래 유지되어 온 인사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서 부처별 업무특성뿐만 아니라 채용방법·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구 의원과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안은 모두 여성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기간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기간과 같이 공무원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명부의 유효기간을 5급 공채는 5년, 나머지 시험은 2년으로 하되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도 출산으로 인한 임용유예가 가능하고 임용 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출산과 육아 자체가 임용의 장애요인은 아니라고 보이며 장기간 임용유예로 채용관계의 불안정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실비변상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 전담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등을 실비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병역법에 근거한 보충역의 신분으로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복무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재외공무원의 경우 일반공무원에게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공중보건의사 등은 예산상 진료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실비변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보전받고 있어서 전체적인 처우 수준은 군의관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안은 정부안과 병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은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중 연령과 학력 부분을 폐지하여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제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공무원시험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연령 등 응시요건을 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 규칙 등 헌법기관의 규칙과 대통령령에서 각종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을 정하고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일정 부분 연령 제한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등을 고려해 볼 때 9급 공채의 응시 상한 연령을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령 제한 폐지 문제는 직업공무원제의 구현이라는 정책적 측면과 공무담임권 및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권 측면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제출안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소청심사위원회, 현재 7명입니다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기준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로 변경하는 등 소청심사제도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며, 그 밖에 법 문장의 한글화 및 용어정비 등을 통해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임용결격공무원

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작년 11월 노동부 등 47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자체 감사기구 운영실태 점검 결과 임용결격 공무원 30명과 재직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당연퇴직 대상 공무원 133명 등 총 163명이 임용무효 또는 당연퇴직되었어야 함에도 장기간 계속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 금년 6월경 해당 공무원은 전원 퇴직 조치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한시법인 동 특례법의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특례법 시행 이후 사실상 근무기간이 종료된 임용결격 또는 당연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특례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이들에게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특별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례법의 제정 배경을 보면, 결격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임용행위는 국가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당연무효이고 재직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은 당연퇴직된다는 판례 및 현행 법률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99년 8월 특례법 제정을 통해 약 1400여 명의 공무원을 사실상 구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특례법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외환위기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 추세에 따라 공공부문에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는바, 이에 따라 정부는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결격 여부를 경찰청 등을 통해 조사하여 98년 2월 결격 여부 확인 대상자 2376명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였고 이 중 1015명이 임용결격자로 최종 확인되어 퇴직 조치된 바 있습니다.

이후 퇴직공무원의 집단민원 및 보상요구에 따라서 99년 8월 이들에게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정상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지급하고 특별채용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동 특례법이 제정된 바 있었습니다.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의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본인들의 귀책사유에 기인하고 있고 이들을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공무원 범죄를 예방하여 공직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격사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고 수시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이 경과한 후 뒤늦게 이를 문제 삼아 보상 없이 퇴직시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볼 때 이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째, 신원조회의 불철저 및 퇴직발령 시점 등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원용하여 모든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모범고용주로서 정부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의 경우 2002년 3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 이후 적발 시에는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개정 이후 적발된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인태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鎔熙 委員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소청심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법, 그전에는 재적 과반수 합의로 되었습니까?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예.

○崔鎔熙 委員 지금 위원이 몇 분이지요? 일곱?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종전에 다섯에서 올해 비상임 두 분을 영입하다 보니까 출석 안 하는 분들이 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는데 가부동수이고 소수의견이고 그럴 때는 불리한 의견을 배제시키고 유리한 의견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소수의견이 실제로 결정되는 사례가 생겨서 이래서는 부당하겠다 그래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해야 합당한 결정 방법이 나오겠다 해서……

○崔鎔熙 委員 그것은 좋은데요.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변경한다 그러는데 만일 불리하게 말하는 위원만 다수가 출석하면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것은 부당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출석위원 과반수라면……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늘었다고 그랬지요?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예.

○崔鉉熙 委員 7명 중에 세 사람이 나왔다 그것도 유효합니까, 예를 들면?

○중앙인사위원회인사정책국장 김성렬 재적위원 3분의 2를 출석요건으로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崔鉉熙 委員 그렇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면 7명 중에……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5명은 와야지요.

○崔鉉熙 委員 3분의 2 이상이라며?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예.

○崔鉉熙 委員 7명의 3분의 2 이상이면 5명이네. 적어도 5명은 출석해서 출석위원의 과반수인 3명만 찬성하면 된다?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예, 그렇지요.

○崔鉉熙 委員 그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재적위원 가운데 출석위원…… 그러면 세 사람이 와서 두 사람이 찬성하면 되네? 의결정족수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한, 그것을 넣어야지.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그것은 다른 조항에 의해서……

○崔鉉熙 委員 그러니까 3분의 2가 출석한다 이 말이지요, 5명이?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예,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현상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崔鉉熙 委員 그러면 됐고요.

결격 공무원 보상 문제, 전번에도 누차 강조했지만 이제 법안이 올라와서 얘기인데 정부가 전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일부 과실은 있지요?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철저하게 못 하고 그 다음에 회신을 철저하게 못 한 그런 책임은 있지요.

○崔鉉熙 委員 오늘 처음 인정하시네요, 책임을. 여태까지는 정부는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번에도?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뒤바꿀 수는 없는 거지요.

○崔鉉熙 委員 이게 정부에 일단은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상 공무수행을 했지요?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공무수행했지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崔鉉熙 委員 공무수행을 했는데 사후에 이게 발견되어 가지고 청천 날벼락으로 지금 퇴직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유지요?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그런데 청천 날벼락이라는 것이……

○崔鉉熙 委員 어쨌든 그것은 맞잖아요?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아니, 그래도 그 원인을 따져보셔야지……

○崔鉉熙 委員 그리고 전에 특별법이 있었지요?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전에 그때도 저희가 정부에서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崔鉉熙 委員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이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은 아니지요.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이런 법은 다시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崔鉉熙 委員 아니, 무슨 법은…… 안 만들면 좋은 것이지요. 무슨 법이든지 법이 많으면 사람을 그만큼 규율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예요.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그거야 복잡하고 환경 변화되면 할 수는 있는데……

○崔鉉熙 委員 그래서 전례도 있고 또 사실상 공무수행을 했고…… 전례 있는 것을 안 해 주면 안 되지요, 전례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까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특례법이. 그 법 할 때 신고기간이 짧아 가지고 신고 못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때 세 사람인가 그래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연장시켜 줬다고요.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崔鉉熙 委員 성질은 좀 다르지만 법이라는 게 뭐요?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게 법이에요.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법이야 위원님이 더 잘 아시는데요. 그런데 그걸……

○崔鉉熙 委員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것을 너무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해 놓으니까 이거 문제 있다고 해 가지고 벌금형도 선택형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그 법 개정 전하고 후가 순간적이잖아요. 그 조그마한 시간 차이로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 보지 않는다, 우

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하셨는데 이 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인사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반대해야겠지요.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아니요, 인사위원장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죄송한 말씀인데 이것은 근본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崔鉛熙 委員 의결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안은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중앙인사위원장 권오룡 국회에서 하는 데도 내재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崔鉛熙 委員 그러니까 내재적 한계도 전례가 있으면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태 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60.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유인태 의원 대표발의)(유인태・최연희・윤호중・이인영・권경석・김명자・최규식・심재덕・김낙순・김근태・문희상・김부겸・강창일・박기춘・노현송・김영춘・임종석・배기선・홍미영・한병도・김원기・정두언・김재윤・원혜영 의원 발의)

6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홍미영・강기정・조성래・이목희・강창일・이계안・서갑원・이인영・주승용・윤원호・우상호・김학송・최규식 의원 발의)

62. 道路交通法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박찬숙・배기선・박재완・정희수・노현송・정병국・서재관・신국환・이해봉・정봉주・구논회・맹형규・신상진・김재원 의원 발의)

6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장윤석・정병국・이혜훈・한선교・안홍준・정종복・최구식・박승환・이군현・서상기・이종구・김충환・신상진・정희수・임인배・이계진・박찬숙・김재경・김정권 의원 발의)

6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장향숙・강창일・홍미영・우원식・지병문・정의용・최규성・김재경・조성래・정청래・우윤근・박영선・김선미・이혜훈・나경원・조성태・노영민・선병렬 의원 발의)

65. 道路交通法 일부개정법률안(진수희 의원 대표발의)(진수희・엄호성・정문헌・이규택・최성・박재완・이재오・정병국・고경화・최재성・안택수・황우여・정봉주・손봉숙・배일도・김애실・이해봉・고흥길・이혜훈・유승희 의원 발의)

6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유기준・이성권・박상돈・김애실・김충환・최성・이명규・박형준・김정훈・박성범 의원 발의)(의안번호 5968)

67. 道路交通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강기정・유승희・강혜숙・김현미・정봉주・노웅래・신중식・선병렬・이광철・신기남・염동연・한광원・이경숙・이인영・박영선・김재홍 의원 발의)

6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범 의원 발의)(박성범 의원 외 19인 발의)

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엄호성・정봉주・우제창・김태환・이근식・이윤성・배일도・이미경・안상수・주승용・김영춘・김태년・김석준・박찬숙・손봉숙・강기정・우제항・김교흥・최인기・신중식・김동철・김재홍・고조흥 의원 발의)

7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정문헌・유기준・배일도・이명규・문희상・정병국・최인기・이계경・신상진・곽성문 의원 발의)

7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영 의원 대표발의)(이원영・박세환・이인기・손봉숙・고진화・김태년・정성호・조경태・양승

조・임해규・고조흥 의원 발의)

7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이성구・엄호성・김재원・이해봉・박찬숙・김재경・김태년・공성진・고경화・손봉숙 의원 발의)

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한선교・이진구・김재원・홍준표・엄호성・김재경・배일도・고경화・정종복・허천・이재오・정장선・신상진・이혜훈・안상수・이근식・심재철・조경태・이인기・박찬숙・유정복・이상경・이윤성・황우여・나경원・고진화・고조흥 의원 발의)(의안번호 2295)

7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광 의원 대표발의)(박명광・이미경・신중식・김낙성・최성・장복심・이영호・채일병・김낙순・서혜석・정청래・김재윤・강창일 의원 발의)

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민병두・장영달・이원영・이미경・최성・임종석・유선호・우상호・이경숙・노현송・홍미영・윤호중・이목희・백원우・우원식・김영춘・이은영・정성호 의원 발의)

7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정성호・윤호중・이광철・이계경・정갑윤・김정권・박기춘・송영길・백원우・민병두・김성곤・김현미・김교흥・이인영 의원 발의)

7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이성권・황우여・박성범・안명옥・정희수・정갑윤・공성진・배일도・김충환・이인기・신상진 의원 발의)

78. 열쇠관리업법안(고조흥 의원 대표발의)(고조흥・안상수・조성래・이인기・엄호성・이해봉・안택수・송영선・김양수・이혜훈 의원 발의)

79.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전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이인영・문학진・홍미영・김영주・김영춘・강창일・이광철・최규식・이목희・민병두・김근태・원혜영・정성호・노현송・박기춘・강기정・이미경・임종석・우원식・오영식・유선호・이경숙・이은영・강성종 의원 발의)

8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유기준・황진하・신상진・김정권・이성권・안상수・정의화・한선교・김명자・이상열・황우여・김양수 의원 발의)

81. 警察大學設置法 폐지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정갑윤・이영순・정성호・지병문・이원영・임종인・이목희・김정권・신학용・문학진 의원 발의)

(17시14분)

○위원장 유인태 의사일정 제60항～제81항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이라는 좋은 제도를 전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백환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환기 전문위원입니다.

유인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현행 경범죄처벌법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는 데 미흡하여 이를 개선하고, 종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질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범죄의 종류 중 가벌성이 감소한 4개 항목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1>의 최근 5년간 단속현황을 보시면 굴뚝 등 관리소홀, 전당품장부 허위기재, 비밀 춤 교습 및 장소제공, 뱀 등 진열행위 등 동 사항들은 거의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이는 국민의 질서의식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벌부과의 필요성이 감소한 것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삭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경범죄의 종류 중 다른 법률로 규제 가능한 8개 항목 삭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은 법익침해의 중대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행위들이고, 대부분이 형법의 보충적・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벌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유사한 처벌조항이 있다거나 최근 단속실적이 미미하다고 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삭제할 시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선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쪽 <표-2>가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단속현황이 왼쪽 구분에 8개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 출판물의 부당게재, 단체가입 강청, 타인의 가축·기계 등 무단조작, 수로유통 방해 등은 최근 5년간 단속실적을 보면 그 위반건수가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현행 제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동 규정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행위유형이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규율할 수 있기 때문인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에 보시면 자연훼손, 정신병자 감호소홀,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미신요법 등은 다른 법률에 의거하여 의율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의 변천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성매매 호객행위에 대한 단속규정 신설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공중의 눈에 보이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기다리거나 행인 가까이 막아서거나 따라붙는 등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성매매에 의한 호객행위는 평온한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서 지역공동체에 위해를 입힐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독일 일본 뉴욕 등은 호객행위를 질서위반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단속규정 신설로 스토킹 부분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현행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법규로는 형법, 경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이 있으나 스토킹의 유형 중에서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제 요구하기 등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처벌하더라도 효과적인 억제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단속공무원의 중지명령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게 경범죄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가 지속되고 있거나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특히, 음주소란의 경우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음주문화와 이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공권력 추락 및 경찰력 소진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5년간 단속현황을 참조하시고요.

개정안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강하게 처벌함으로써 선량한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그 규제를 할 때 과도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위법행위가 지속될 시 타인에 대해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음은 별도의 유인물 홍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험사업자 등에게 교통사고사상자 발생사항 통보 의무 부여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보험사업자 등이 보험접수를 통해 알게 된 교통사고사상자 발생사항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이를 경찰이 조사해 전산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이 교통정책 입안이나 대책수립 시 정확히 반영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효율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찰의 사고조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범죄 등을 근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이를 의무화하면서 운행 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보험가입자는 사람이 다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보험으로 사고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저조한 신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경찰의 교통사고통계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입안이나 대책수립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 이후 경미한 차이를 보이던 경찰과 보험사 간 교통사고통계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표 2>의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은 사망건수 부상건수 경찰과 보험회사 각각 제기한 통계로 교통사고 건수는 차량 1대, 예를 들면 버스 1대도 한 건으로 처리가 되는데 사망건수 부상건수에서는 각자 다친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최근에 부상건수에서는 경찰이 집계한 것보다 보험에 신고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통계 불일치 부분 중 가장 큰 요인이 조금 전에 지적드린 헌재의 결정에 따른 신고의무조항의 구속력 상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경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10대 중과실 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보험사업자 등이 보험접수를 통해 알게 된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사항을 의무적으로 관할 경찰관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이를 경찰이 조사해 전산 등록·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에게 조사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지우고, 원하지 않는 사건조사를 받는 등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통계업무를 통계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에 관련되어서 개정안은 경찰청장의 권한 또는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통계업무 등을 전문기관인 통계청에 위임하여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우리나라 각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는 기관 스스로 작성·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통계만을 통계청에 위임하여 특별히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별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박찬숙 의원·장윤석 의원·이상민 의원·진수희 의원·한선교 의원·민병두 의원·박성범 의원·최재성 의원·안명옥 의원·이원영 의원·이성구 의원·한선교 의원·박명광 의원·이인영 의원·김영춘 의원·유기준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목차가 되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음주운전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광역교통정보 사업 근거 마련 관련,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 교부 거

부 관련, 교통안전교육 실시 시기 변경 등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 음주운전 규제 강화 관련입니다.

박찬숙 의원안은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동승자에게 운전자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말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장윤석 의원안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음주운전 금지 의무 위반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며, 이상민 의원안은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음주운전 금지기준을 0.03% 이상으로 강화하고, 동승자에게 음주운전자 운전 저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먼저, 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조항 신설 필요성 및 적정 처벌수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자가 현행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초과하여 운전하는지에 대한 동승자의 객관적인 측정의 어려움과 동승자가 술에 취하여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탑승한 경우 교사 및 방조 여부에 대한 거증책임의 입증 등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자는 이상민 의원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그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의 단속기준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치로서 혈중알콜농도 또는 호흡중알콜농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반운전자에게 적용하는 음주운전의 최저 기준치는 우리나라 기준의 혈중알콜농도로 환산해서 대략 0.02%~0.10%로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1세 미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8%보다 현저히 낮은 0.02%로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21세 미만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시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고 있고, 현재 미국의 50개 모든 주와 연방수도인 워싱턴DC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운전 관련 수행능력의 변화, 이것은 1978년 미국 교통안전청에서 조사를 하고 연구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항들의 연구결과를 요약한 내용은 3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하단입니다.

미국 교통안전청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음주로 인해 일반적으로 정보처리, 지각 및 심리운동기능이 저하되어 안전운전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범위는 BAC가 0.05%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0.05% 이하의 낮은 BAC 수준에서도 일부 개인에게 있어서는 주의분할, 심리운동기능, 경계력 등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술에 대한 내성이 적은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영향이 클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2006년도 음주운전사고 분석결과도 25세 이하 및 56세 이상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망자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안전운전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혈중알콜농도 범위는 0.05%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민 의원이 제안한 혈중알콜농도 0.03% 기준은 운전행동 손상 가능성 측면에서 모든 운전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미국 등의 사례를 감안하여 청소년 등에 선택적으로 시범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의 별첨 자료는 미국 음주운전자 처벌의 무관용원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자는 장윤석 의원안과 이상민 의원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벌금액수 및 징역형의 기간 연장 등 음주운전 법정형량을 높여 처벌의 엄격을 기함으로써 음주운전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2006년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실시한 연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통범죄에는 형사처벌보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강화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습위반자 등에 대한 알콜 시동잠금장치 사

용명령제도나 자동차 압류제도 등 보다 효과적인 규제 및 예방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의무화 및 보호조치 강화입니다.

박성범 의원안, 최재성 의원안, 한선교 의원안이 각각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보호구역 안에는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과 통학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5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보호구역 지정의 실익이 없거나 국도의 경우 속도제한 조치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제동거리가 짧을 경우에는 급격한 감속으로 추돌 위험이 있는 곳까지 지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시설물의 설치 등 예산상의 조치 등이 수반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호조치 강화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행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신호기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과 방호울타리 도로방지턱 등 도로부속물, 통행로 설치 및 각종 제한조치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이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김정권 의원의 2006년도 국정감사자료집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통학로에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는 경우 등 9개의 사고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부족한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의 설치, 통학로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들 시설물의 추가 설치 필요성은 인정되나 주변 도로상황 등에 따라 시설물을 달리 설치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보다 관계 당국이 도로특성에 맞게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되, 이를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에 보육시설을 포함하는 진수희 의원안은 2005년도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시 특수학교와 보육시설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달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가중처벌로, 민병두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 및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가중처벌하려는 것입니다.

67쪽 상단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 구역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반도로와 달리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행이 잦은 등·하교 길의 안전을 기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호구역을 특별히 보호하고 벌칙을 좀더 무겁게 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사전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제도 도입의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각종 제한조치 위반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가중처벌할 경우 경미한 위반행위인 범칙행위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유사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위반, 무면허운전 금지 위반,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위반 등과 같이 벌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법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구역 내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익 침해의 중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범칙행위 제외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쪽 어린이보호구역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의무화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범죄 및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어린이 유괴범죄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는 일정 부분 개인의 초상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청회 등을 거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쪽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신고 의무화, 박명광 의원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7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주변운전자의 주의의무 강화, 이원영 의원안과 한선교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서 어린이나 유아를 태우거나 내리는 중일 경우에 주변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원영 의원안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운행을 재개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도록 하고 있고, 한선교 의원안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것을 마치고 보도·길 가장자리 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하였음을 확인하고 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2개의 개정안은 현행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개인에 따라 안전에 대하여 느끼는 의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더 구체화함으로써 근본적인 사고예방을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이원영 의원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주변운전자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재개 시까지 도로에 정지하여 있음으로써 도심지 도로에서의 교통혼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할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쪽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 강화, 이성구 의원안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어린이통학버스 유사도장 및 표지금지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내용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80쪽 광역 교통정보 사업 근거 마련, 이인영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광역 교통정보 수집·제공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의무자를 현행 지방경찰청장에서 경찰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은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해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국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중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에 교통정보센터 및 CCTV 등 교통정보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광역 교통정보의 수집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지역 광역 교통정보 기반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은 도로교통법 14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지방경찰청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각 지방경찰청 단위로는 효율적인 교통관리 및 실시간 교통정보의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고 도시지역의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교통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교통정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쪽,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 교부 시 제재 관련, 김영춘 의원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87쪽 중단 교통안전교육 실시시기 변경 등, 유기준 의원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시기를 현행 기능시험 응시 전에서 학과시험 응시 전으로 변경하고 교통안전교육 중 일부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학과시험 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생의 수강에 대한 집중력 등이 저하되어 교육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학과시험 전에 실시하여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제도를 시행할 때 수강에 대한 국민의 편리성도 함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교통안전교육 중 일부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의 경우 교육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수강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리교육 시 확인·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수강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경찰청은 사이버 교육 도입의 타당성 및 도입 사례 분석 등을 교통 관련 전문기관에 연구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 고조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열쇠관리업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열쇠관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 하여금 자격증 취득 및 사무소 등록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열쇠 등 관련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열쇠 등을 이용한 각종 범죄행위를 사후에 적발, 검거하는 것만으로는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경감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도어록, 음성인식키, 지문인식키, 홍채인식키 등의 등장으로 기존의 열쇠 개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열쇠업은 장기적으로 자유시장경쟁체제에 맡겨야 되는 첨단산업분야로 이에 대한 규제는 출입통제 시스템, 무인경비 시스템 등 관련 산업의 발전에 제약을 가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쇠 이용 침입 절도범죄 현황을 보면 2007년도 절도 건수 중에서 131건으로 0.1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별도 유인물 이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총포류 임대업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총포류의 사용 용도가 영화·연극 등 예술 소품용인 경우 이를 임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화·연극 등 예술 소품용 총포류의 경우 국내에 임대제도가 없어 촬영 종료 후 반출을 조건으로 고액의 외화를 낭비하면서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 수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 후 재수출하고 필요 시 재수입하는 등 행정절차의 번거로움과 외화의 낭비 요소가 있으며 번거로운 수·출입 과정에서 총포 관리상 분실 및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총포류 임대업제도가 도입될 경우 임대업자가 소품용 총기를 수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영화사 등에 필요할 경우에만 이를 대여하므로 불필요한 외화 낭비를 방지하고 번거로운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관리의 집중화로 도난 등에 따른 소품용 총기 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포류 소지 허가 결격 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총포류 소지 허가 결격 사유에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포류를 사용하여 밀렵 등을 한 자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소지 허가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뿐만 아니라 야생식물에 대한 채취, 훼손 등에 대하여도 이를 규제하고 있는바 이를 위반한 자 모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총포류를 사용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 등을 행한 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사총포의 국내 제조·판매·소지 등 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총포와 비슷하게 보이는 유사총포의 국내 제조·판매·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유사총포에 대한 국내 제조·판매를 금지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외국제품의 밀수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세계 유일의 유희용 전동소총을 개발, 판매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대만 역시 가스 작동식 권총 분야에서 세계 2위의 자리로까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으나 유사총포의 국내 제조·판매·소지를 허용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총포류·화약류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총포류 및 화약류에 대하여 현행 행상·노점의 방법이나 그 밖의 옥외 판매에 한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을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도 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포류 및 화약류가 유통 과정에서 잘못 사용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끼칠 위해를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은 21세기 상거래의 핵심적인 판매기법으로 공급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줌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실현과 생산자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는 판매기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관련 산업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 법에서 제조·판매·소지·사용 등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과정에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상거래 등의 판매와 광고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를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총포협회의 재정악화로 인한 협회의 업무중단 위기를 극복하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총포·화약을 이용한 테러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연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를 총포·화약안전기술연구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이해됩니다.

다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외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동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유사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소방검정공단 등과 같은 공단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음은 별도 유인물 유기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고에 의한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기간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신고에 의한 옥외 집회 또는 시위 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고 취소 시 취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집회 신고 후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를 열지 않는 소위 유령집회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표1〉을 보시게 되면 집회 미개최 비율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 중단입니다.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의사가 없이 특정한 집회 및 시위를 원천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허위신고가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상당히 침해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집회 기간을 현행 29일에서 7일로 제한하고, 취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허위신고 등의 부적절한 사례를 방지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다 많은 당사자들에게 균형 있게 보장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의 기간을 현행 29일에서 7일로 제한하는 것은 그 성격상 상당 기간을 요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칫 국민에게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제약으로 비쳐질 소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집회 기간에 대한 적정한 산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타인의 집회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당연한 규제로 보이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제한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다른 규제 방법도 없나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후순위자의 집회권 보장입니다.

개정안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후순위자의 집회권 보장을 위하여 선순위 신고자에게 최초 3일간만 우선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후순위 신고자와 1일씩 교대로 집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순위 신고자의 무한정한 장기집회로부터 후순위자의 집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좀더 많은 단체나 개인의 집회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자의 집회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이로 인하여 선순위자의 진정한 집회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그 집회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 최규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경찰대학설치법 폐지법률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경찰대학설치법을 폐지함으로써 경찰대학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일을 2012년 2월 28일로 함으로써 기존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현행법에 따라 졸업하도록 하고, 2009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은 치안행정의 발전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우수한 인재를 초급간부요원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이 되었으며, 경찰대학 현황은 경찰대학 재학생은 총 480명, 학년당 120명입니다. 교직원은 학장을 비롯한 교수 및 행정요원 정원이 240명이며, 현원은 228명입니다. 경찰대학의 운영을 위한 예산은 2008년도에 85억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졸업생 현황은 1985년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현재 제22기까지 252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퇴직자는 195명이고, 현재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인원은 금년 11월 현재 2424명입니다.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찰대학 출신자의 계급별 현황은 5쪽 원형 파이차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찰대학 출신자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사항입니다.

경찰대학 출신자는 경찰의 업무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경찰대 출신자들이 경찰 내의 요직을 독점하고 파벌문화를 만들며 하위직과의 갈등을 유발해 조직의 안정을 해친다는 비판적 시각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찰대학 폐지의 논의경과는 7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8쪽은 경찰대학 폐지에 관한 논의의 경찰대학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을 정리한 내용이고, 9쪽은 경찰대학을 존속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0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경찰대학의 폐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이로 인하여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월간중앙이 2005년 10월 20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경찰대학의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73%, 2007년 4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경찰대학의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79.8%였습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2005년도에 경찰관 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폐지 56% 반대 41.2%, 2007년도에 한국행정연구원이 경찰관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존속 의견이 53.3%였으므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찰대학의 폐지에 관하여 각각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경찰조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있어 경찰인사운용에 유용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와 함께 직접 치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결과 또한 충분히 반영하여 법안을 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찰대학을 폐지할 경우 폐지법률안에 대한 보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입시제도 변경 등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 방지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부칙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 입시제도의 변경은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경찰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기대를 고려하여 기존 제도의 변경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 부칙조항의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을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경찰대학의 다른 직무과정의 유지 관련입니다. 현재 경찰대학은 학부과정 외에 치안정책과정·경정과정·경감과정 및 직무전문화과정 등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경찰대학이 폐지되더라도

계속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경찰대학을 폐지할 경우 이러한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찰대학의 시설을 이용한 경찰연수원의 설치 및 활용방안 또는 경찰종합학교에서의 과정 개설 등을 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경찰대학 폐지 여부와 관련된 그간의 각종 정책대안의 존속을 전제로 한 대안은 13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폐지를 전제로 한 대안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유인태 유인물 더 참조할 것도 없네요, 너무 상세하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인태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

○유기준 위원 경범죄……

○위원장 유인태 예, 경범죄.

○유기준 위원 경범죄처벌법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규적인 법률로 우리가 접근하면 이렇게 많은 내용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마는 형법의 보충적 성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또 가벌성이 경미한 국민 일상생활을 조율하는 그런 법률로서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경찰의 유연한 법 집행을 돕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플리바게닝의 역할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인데, 여기서 예를 들면 '단체가입 강청'은 폭행죄에 달할 수 있는 정도이고 '정신병자 감호소홀'도 폭행, '동물 등에 의한 행패' 여기도 폭행, '미신요법' 이것은 사기, 이런 것으로 사실 의율할 수도 있지만 경찰이 가벌성이라든지 행위의 정도로 봐서 여기로 의율하면서 유연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폐지하고 다른 법률로 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법 집행이 상당히 경직화되면서 경찰이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인권을 좀더 나쁜 쪽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이택순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내용들은 법률을 운영해 본 결과 거의 단속실적이 없거나 위반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유기준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찰청장 이택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유연성을 발휘하면서 경직성을 탈피해야 된다는 데 이 경범죄처벌법의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유기준 위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입건을 해서 수사해서 나중에 검찰에 송치해서 처벌을 받게 할 가벌성이 아주 중요한 것과 이것을 처벌할까 말까, 그렇지만 이것은 약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경범죄 같은 것을 처벌하는 그런 중간단계의 범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없애 버리면, 그리고 유 아니면 무로 해 가지고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중에 경찰이 선택해 버린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동물 등에 의한 행패, 미신요법, 단체가입 강청 이런 것들은 중간 정도 질에 있으면서 형법과 일반법 사이의 간격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없애 버리면 경찰이 오히려 유연한 법 집행을 못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경찰청장 이택순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의 규정규정마다 개인의 인권이라든지 또는 다른 형법 또 특별법과의 관계가 매우 특별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것들이 더 좋은 그런 규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심도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나중에 법안심사위에서 의견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장 이택순 예. 그 취지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홍미영 의원님이 제출하신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사고의 보험회사 신고 건수와 경찰의 건수가 달라 가지고 교통사고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불편한 점이 초래된다, 이것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형사책임에 관련되지 않는 한 신고하지 않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법으로서 보험사업자가 신고를 하도록 한다면 위헌 소지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전 세계 입법의 대세가 이런 사적영역을 오히려 확대하는 쪽인데 사적영역을 축소하고 이렇게 신고를 강제한다 그러면 시대의 대세에 역행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장 이택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공소권이 없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이 대개 한 120만 명의 인원이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전부 조사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적인 또는 인력 증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 하면 좋겠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고 그 취지도 저희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도 인력상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가능성도 많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이왕 한 김에 계속……

○위원장 유인태 그러면 건별로 하지 말고 상정된 법안 전체에 대해서 한꺼번에 일괄 질의하시지요.

○유기준 위원 예.

열쇠관리업법안, 고조흥 의원이 제출하신 것 보면요, 여기에 열쇠관리사, 열쇠관리업에만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불법 해정기구를 이용해서 주택에 침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단속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업자 중심으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재산이라든지 생명을 지키는 쪽은 미흡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청에서도 그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별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경찰청장 이택순 열쇠관리법을 제정하게 되면 관련 업종인 기계경비업법이라든지 자동차정비업법 또 잠금장치 제조업법이라든가 이런 업종에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관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태 홍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미영 위원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께서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또 경찰 쪽의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법안소위에서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으므로 여기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유기준 위원님 얘기한 부분이 헌재에서 제한했던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 제가 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법무법인 쪽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험사에다가 신고를 하게끔 하는 부분은 작위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없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개정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해당될 소지가 없다 하는 부분들에 법리판단을 받았다는 부분하고, 경찰청에서는 단지 이 부분을 경찰력의 부족 때문에 일일이 공소권 없는 사람들의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부분은 너무 소극적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통사고 사상자율이라든가 사건율하고 현재 진행된 경찰에서 집계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모르는데 거의 3배의 차이가 나고 또 교통사고에 대한 개선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될 부분이지 그것에 대해서 '인력이 없으므로' 또 '예산이 듦으로' 하면서 회피를 하는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될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기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안소위 때 자료를 대신 제출하면서 판단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인태 홍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鉛熙 委員 경찰대학 폐지법률안이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장 이택순 경찰대학 출신들이 우수한 자질이기는 하지만 조직 내에서 분파주의적인 행동이 일부 보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경찰업무 수행에 있어서 과거 세무대학과 같은 폐해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崔鉛熙 委員 그런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인원수를, 정원을 좀 줄이고 또 대학졸업자들에 대해서 계급을, 직급을 좀 낮춘다든가 그것은 이미 졸업한 사람들과 형평에 맞지 않지 않아요?

○경찰청장 이택순 졸업자와의 형평, 졸업자가 그동안 과잉의 대우를 받았다면 그것을 어느 수준 줄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조직 내에서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崔鉉熙 委員 120명요?

○경찰청장 이택순 예, 1년에 120명 졸업합니다.

○崔鉉熙 委員 1년에 한 80명 정도로 줄이고 아까 경사급으로 한다는데 이미 졸업한 사람들은 경위이고 새로 들어간 사람은 경사이고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경찰대학의 지원자가 더 줄지 않겠느냐? 직급을 낮추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경찰청장 이택순 하나의 안에 불과한데요, 경사로 임용해서 일정기간 이후에 바로 경위가 되도록 하는 수습기간을 거쳐서 순경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연령적인 핸디캡도 만회하고 일선 경험도 쌓게 하자는 그런 취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많은 안 중의 하나이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崔鉉熙 委員 그러면 경찰에서 대안을 낸 것은 아니지요?

○경찰청장 이택순 예, 낸 것은 아닙니다. 너무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용역결과는 나왔고 내부 의견도 수렴이 됐지만 중요한 문제들을 바로 다루기가 어려워서 어차피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을 전부 한 번 수렴하게 될 때 그때 제시해 가지고 해 볼까 하는 그런 내부의 의견이 있습니다.

○崔鉉熙 委員 그러고요, 하나의 제도로 만들 때는 그만큼 심사숙고하고 고생해서 만든 제도인데 비판이 있고 또 일부 비난까지 있다 해서 그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경찰청장 이택순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崔鉉熙 委員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인태 최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님, 이상배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 소방방재청장 중앙인사위원장 및 경찰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남아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권경석	김기춘	김기현	김부겸
김정권	노현송	박기춘	심재덕
유기준	유인태	윤호중	이상배
이인영	정갑윤	정성호	최규식
최연희	홍미영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신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인식
전문위원	백환기

○정부측 참석자

행정자치부	
장관	박명재
제1차관	최양식
제2차관	한범덕
정책홍보관리실장	김남석
지방행정본부장	강병규
지방재정세제본부장	황준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권오룡
인사정책국장	김성렬
소방방재청	
청장	문원경
예방안전본부장	이석환
경찰청장	이택순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기인
사무처장	설동일
조사정책보좌관	김진태

○기타 참석자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장 태 평

【보고사항】

○의안 회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7. 10. 22 안상수·이성구·이영호·엄호성·김명자·이인기·황우여·박세환·김정권·신상진·유기준·김충환 의원 발의)

10월 23일 회부됨

警察大學設置法 폐지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

(2007. 10. 26 최규식·정갑윤·이영순·정성호·지병문·이원영·임종인·이목희·김정권·신학용·문학진 의원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0. 30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31일 회부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

(2007. 11. 2 이광재·노영민·서갑원·한병도·정청래·백원우·김태홍·최철국·조일현·정장선 의원 발의)

11월 6일 회부됨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2007. 11. 5 배일도·박계동·이재웅·정병국·문희·신상진·진수희·고희선·김영숙·주성영·김충환·차명진·김영덕·안명옥 의원 발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7. 11. 5 엄호성·안택수·서병수·이종구·김재경·이혜훈·안명옥·이재웅·김양수·이계경·이성권·박순자 의원 발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명 의원 대표발의)

(2007. 11. 6 신명·강창일·신학용·김덕규·김성곤·정성호·강혜숙·윤원호·김춘진·배일도 의원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1. 6 정부 제출)

이상 4건 11월 7일 회부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7. 11. 7 한선교·김정권·엄호성·유기준·서상기·김재원·유정복·신상진·김양수·이명규 의원 발의)

公務員敎育訓練法 일부개정법률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07. 11. 7 한선교·김정권·엄호성·유기준·서상기·김재원·유정복·신상진·김양수·이명규 의원 발의)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1. 7 정부 제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07. 11. 7 김우남·강창일·김재윤·신중식·한광원·서갑원·조경태·최규성·홍문표·김송자·이강두 의원 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2007. 11. 7 배일도·박계동·신상진·정두언·이재오·김춘진·김영숙·주성영·차명진·김정훈·송영선·김무성·이경재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

(2007. 11. 7 박기춘·강창일·김정권·이광철·선병렬·이시종·김교흥·김종률·유시민·김형주·이화영·이원영·김재윤·우제항·서갑원·김우남·정진석·노현송·윤호중·김부겸·신학용·이계안·정성호·최재성·우제창 의원 발의)

이상 6건 11월 9일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7. 11. 8 이상배·김광원·임인배·안홍준·김영덕·김태환·김양수·한광원·박형준·문희·김성조·박순자·김우남·정갑윤 의원 발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7. 11. 8 이상배·김광원·임인배·안홍준·김영덕·김태환·김양수·한광원·박형준·문희·김성조·박순자·김우남·정갑윤 의원 발의)

警察職務應援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배 의원 대표발의)

(2007. 11. 8 이상배·김광원·임인배·안홍준·김영덕·김태환·김양수·한광원·박형준·문희·김성조·박순자·김우남·정갑윤

의원 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7. 11. 8 김재윤·강창일·김우남·정청래·강혜숙·안민석·이미경·이상경·이광철·전병헌·지병문·이광재·조배숙 의원 발의)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7. 11. 9 정부 제출)

이상 5건 11월 12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07. 11. 8 김춘진·이영호·채일병·한광원·최용규·한병도·장영달·최규식·신명·이광철·배일도 의원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윤 의원 대표발의)

(2007. 11. 8 김재윤·강창일·김우남·정청래·강혜숙·안민석·이미경·이상경·이광철·전병헌·지병문·이광재·조배숙 의원 발의)

모바일산업진흥법안(김태환 의원 대표발의)

(2007. 11. 9 김태환·김석준·정희수·주호영·안택수·신상진·이인기·임인배·이상배·강재섭·서상기·김명주·이강두·문희·김애실·정진섭·심재철·김정권·권오을·이주영·김성조·권경석·이한구 의원 발의)

백제왕궁체험도시 복원·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07. 11. 9 조배숙·한병도·김종률·윤원호·김동철·강혜숙·유기홍·최성·김우남·지병문·김형주·서재관·이상경·이경숙·이은영·배기선·장향숙·유재건·문희상·이미경·김희선·심재덕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